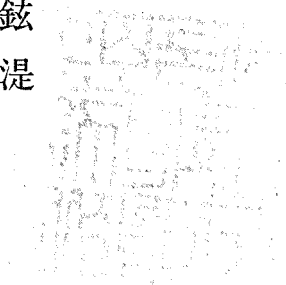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調査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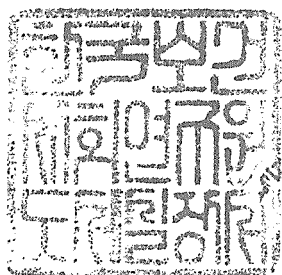
林 鍾 權

張 東 鉉

趙 洪 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埋葬을 위주로 한 葬墓慣行에 따라 國土의 墓地化 面積이 지속적으로 增加하고 있다. 매년 약 20만기의 새로운 墳墓는 9km²의 면적을 蠶食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首都圈을 비롯하여 全國적으로 2~10年 이내에 集團基地의 供給이 限界에 이를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國土面積이 넓은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國土의 利用價値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墓地面積의 縮小, 集團化, 火葬率提高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相對적으로 國土面積이 좁고, 人口密度가 높은 우리는 埋葬率이 높은 반면 火葬率이 낮고, 個人墓 選好와 墳墓 1基堂 占有面積이 넓으며, 無緣墳墓로 放置되어 있는 墓 등 國土의 非效率의 利用이 묘지관리 의 문제점으로 指摘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를 根本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葬墓制度를 樹立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1993년에 “埋葬 및 墓地等에 관한 法律改正案”을 立法豫告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傳統的인 葬墓文化에 젖어 있는 國民의 意識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여 保留하게 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國民의 폭넓은 意見을 收斂하여 國民的 共感帶가 형성될 수 있는 改正案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찍이 우리나라 墓制에 관한 問題가 社會 各界 各層에서 提起되어온 바 그에 따른 研究와 公聽會, 세미나도 많이 시행되었고, 導出된 問題에 따라 改善方案이 提示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改善하고자 하는 內容에 대한 國民의 意見이 收斂된 것은 없었거나 부족하며, 특히 墓制에 관하여 國民의 意識 行態를 폭넓게 調査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研究結果는 關聯法的 改正 및 管理方案을 樹立하고 傳統的인 葬墓制度에 대한 國民의 意識變化를 위한 弘報, 啓蒙 戰略樹立에 寄與함으로

써 우리나라 葬墓文化의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墓地制度에 관하여 研究 또는 墓地行政을 맡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一讀을 권하고 싶다.

연구진은 이 研究를 위하여 실시한 現地調査에 協助하여 주신 각 市·道 關係者와 調査를 직접 하여 주신 社會福祉士 여러분께 깊이 感謝하고 있으며, 또한 본 원고를 檢讀하여 주신 趙南勳 副院長, 鄭基源 博士 그리고 標本 調査地域 抽出과 統計 電算處理를 하여 주신 桂勳邦 調査統計室長, 申昌雨 電算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延 河 清

目 次

第 1 章 序 論	9
第 1 節 研究背景 및 必要性	9
第 2 節 研究目的	11
第 2 章 研究方法 및 先行研究	12
第 1 節 研究方法	12
第 2 節 標本設計 概要	16
第 3 節 先行研究	20
第 3 章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	24
第 1 節 應答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	24
1. 人口學的 特性	24
2. 社會學的 特性	24
第 2 節 墓地制度에 관한 意識行態	27
1. 墓地問題에 관한 意識	27
2. 墓地法規에 관한 認知度	29
3. 墓地面積에 관한 意識	33
4. 墓地制度 改善에 관한 意識 및 態度	37
第 3 節 葬墓 行態	66
1. 本人의 墓地	66
2. 祖上의 墓 조성에 대한 行態	68
3. 改葬(移葬) 實態	71
第 4 章 墓地制度에 대한 考察	72
第 1 節 우리나라의 墓地制度	72
第 2 節 最近의 墓地制度	74
第 3 節 外國의 墓地制度	76
第 4 節 外國 墓制와의 主要 制度 比較	80

第 5 章 要約 與 結論	82
第 1 節 要 約	83
第 2 節 論 議	88
第 3 節 政策 建議	94
參考文獻	100
附 錄	103

表 目 次

<表 2- 1>	市部·郡部別 調査結果 內譯	14
<表 2- 2>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細部內譯	18
<表 3- 1>	應答者의 人口學的 特性	25
<表 3- 2>	應答者의 社會學的 特性	26
<表 3- 3>	墓地面積 增加에 관한 問題意識	28
<表 3- 4>	喪을 당하여 겪은 問題內容	29
<表 3- 5>	墓制關聯 法律 有無 認知度	30
<表 3- 6>	墓制關聯 規制有無 認知度	31
<表 3- 7>	不法墓 措置에 대한 意見	32
<表 3- 8>	墓地問題 解決을 위해 罰則을 強化할 경우에 관한 意見 ...	32
<表 3- 9>	現行 墓地面積 基準을 縮小하는데 관한 意見	34
<表 3-10>	外國의 墓地面積 基準	35
<表 3-11>	墳墓 1基堂 適正面積 規模	35
<表 3-12>	豪華墓로 인식하고 있는 面積基準	37
<表 3-13>	火葬 贊成率	38
<表 3-14>	年齡 階層別 火葬 贊成率	39
<表 3-15>	火葬을 贊成하는 群의 諸特性	40
<表 3-16>	宗教別 火葬贊成 및 遺言 與否	41
<表 3-17>	學歷別 火葬 贊成率	42
<表 3-18>	各國의 火葬率 比較	43
<表 3-19>	우리나라의 年度別 火葬率 推移	43
<表 3-20>	火葬을 反對하는 群의 諸特性	44
<表 3-21>	宗教別 火葬反對 理由와 向後 反對意思 轉向與否	46
<表 3-22>	火葬을 해야 할 對象者別 贊成率	47
<表 3-23>	納骨墓, 納骨堂 認知度	49
<表 3-24>	納骨墓, 納骨堂의 長點에 대한 認知率	49
<表 3-25>	家族納骨墓(堂)를 普及할 경우 使用與否	50
<表 3-26>	納骨墓를 勸獎할 경우 使用與否	50

<表 3-27>	時限附 墓地制 導入 贊成與否와 埋葬期間 및 延長回數	52
<表 3-28>	墓地 일제 申告를 할 경우 期日內 申告與否	53
<表 3-29>	墓地申告制 強化에 대한 意見	54
<表 3-30>	無緣故墓 措置에 대한 意見	55
<表 3-31>	移葬(改葬)한 墓地 再使用에 대한 贊成與否	55
<表 3-32>	個人墓 造成에 대한 意見	57
<表 3-33>	個人墓의 短點에 대한 認知率	57
<表 3-34>	風水地理에 대한 信賴程度	59
<表 3-35>	學歷別 風水地理 信賴度	60
<表 3-36>	宗教가 葬禮方法 및 墓地選擇에 미치는 影響程度	60
<表 3-37>	墓地造成地域을 住居地 隣近에 造成하는 것에 대한 意見	61
<表 3-38>	墳墓基地權 및 保護請求權 廢止에 대한 贊成與否	62
<表 3-39>	墓地 豫約制에 대한 贊成與否	62
<表 3-40>	祖上墓 管理의 子孫에 대한 期待	63
<表 3-41>	豪華墓에 대한 意見	65
<表 3-42>	共同墓地 措置에 대한 意見	65
<表 3-43>	墓地慣行 改善을 위한 弘報·啓蒙 方法	66
<表 3-44>	本人(配偶者)의 墓地 確保與否	67
<表 3-45>	子孫들에게 바라는 墓地	67
<表 3-46>	本人의 葬禮方法에 대한 遺言與否	68
<表 3-47>	父母님의 墓지를 現在의 位置에 쓴 理由	68
<表 3-48>	父母님의 墓자리 明堂 選擇與否 및 選定한 者	69
<表 3-49>	宗教別 明堂 選擇與否	70
<表 3-50>	父母님의 墓地 許可與否	70
<表 3-51>	父母님의 墓地에 대한 滿足度	70
<表 3-52>	祖上墓의 移葬 經驗有無 및 移葬한 理由	71
<表 4-1>	外國 墓地制度와의 比較	80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背景 및 必要性

우리나라는 祖上을 崇拜하고, 孝를 근본으로 하는 儒敎的인 風習이 傳統文化의 脈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는 葬墓文化에 있어서도 뿌리깊게 작용하여 埋葬을 위주로 한 葬墓慣行(Funeral customs)이 定着되어 있는 실정이다.

墓地制度가 안고 있는 문제를 制度的, 地理的, 慣習的 側面에서 보면 解放以後 무분별하게 생겨난 묘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埋葬 및 墓地 等에 관한 法律(法律 第799號, 1961.12.)”을 제정하였고, 지금까지 3次에 걸쳐 改正을 하여왔지만 墓地問題에 대해 法律, 行政의으로만 부분적으로 대응했을 뿐 실제로 가능한 方法論的 次元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地理的 要因의 문제는 우리나라 남한의 國土面積은 99,314km²로 人口密度가 높은 실정임에도 土地의 非效率的 利用이 增加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土地利用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課題가 되어왔으며, 특히 2000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人口는 4,7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통계청, 1993)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土地資源의 需要는 더욱 急増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墓地가 차지하는 面積은 970km²로 全國土 面積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每年 약 9km²가 墓地化되고 있다. 또한 이를 국토의 이용가치 면에서 볼 때 전체 묘의 90% 가량이 土地의 可用性이 높은 都市周邊의 야산이나 구릉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년 20여 만기의 새로운 분묘발생은 약 9km²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서울의 경우 2년, 首都圈 5년, 全國은 10년 이내에 集

團墓地 供給이 限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慣習의인 요인은 高麗 충렬왕 이후 朱子學의 傳來에 따라 佛教式 葬禮가 금지당하고 朱子家禮에 의한 儒敎式 葬禮가 시행된 이후 埋葬이 慣行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이러한 葬墓慣行은 風水地理思想의 影響으로 死者의 空間이 個人化되고 祖上들은 吉地 즉 明堂을 찾아 家族들과 멀리 떨어져 全國 到處에 分散되어 있기도 하다(홍석기, 1994). 이에 따라 現在 全體 墓地中 약 70%가 個人(宗中, 先山, 家族) 墓로 墓地面積을 필요이상으로 넓게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位置가 地理적으로 自然景觀을 해치는 자리에 대부분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以外에도 앞으로 家族構造의 變化 즉 核家族化의 심화, 男兒가 없는 家庭의 증가 등은 祖上墓의 管理를 孝의 근본 중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는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墓地制度를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고 向後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1993년에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改正案을 立法豫告하게 되었다. 改正案의 주요 骨子は (1) 墓地面積의 基準 縮小 (2) 無緣故, 不法墓의 整備 및 防止 (3) 時限附 墓地制의 導入 (4) 公設公園墓地, 火葬場, 納骨堂, 納骨墓 施設의 擴充 (5) 罰則強化 등이다. 그러나 이 案은 보류된 채 墓地問題가 중요하다는 것을 國家나 社會一角에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망치되고 있다.

改正 法律案이 보류된 이유는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墓地問題는 國民의 傳統的인 文化, 情緒와 直接的인 聯關이 있는 문제로 국민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며, 앞으로 보다 폭넓은 國民의 意見을 수렴하여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研究는 國民의 傳統的인 美風良俗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恒久的이고 根本的인 改善對策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國民의 共感帶가 형성될 수 있는 法律案 마련에 國民의 集約된 意見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第 2 節 研究目的

本 研究는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의 意識·行態를 파악함으로써 墓地制度의 改善方向을 摸索하고 法律改正 및 弘報·啓蒙 戰略樹立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目的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1. 墓地法律에 대한 認知度を 把握하기 위하여 墓地管理에 관한 法律有無, 墓地의 面積, 場所, 申告 등에 관하여 法的으로 規制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不法墓의 措置에 대한 意見과 法律의 규제사항 強化에 대한 반응 등을 알아보았다.
2. 墓地制度에 대한 意識行態 및 墓地 使用實態를 파악하고자 墓地問題의 深刻性에 대한 認識, 묘지면적 축소에 대한 의견, 墓地制度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서 화장 찬성 여부, 남골묘(당)에 대한 인지도, 시한부 묘지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無緣故墳墓 정비에 대한 의견, 豪華墓 설치에 대한 의견, 共同墓地 조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葬墓行態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3. 國民의 意識變化를 위한 弘報·啓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效果的인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弘報·啓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第 2 章 研究方法 및 先行研究

第 1 節 研究方法

1. 調査母集團 및 調査規模

가. 調査母集團

全國에서 濟州道를 포함한 모든 섬地域은 調査對象地域에서 除外하였다. 이는, 交通이 불편한 섬地域에서 標本調査區가 抽出되면 調査費用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現地調査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섬地域의 家口數는 全國 家口數의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調査對象이 되는 家口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의 家口를 포함시켰다.

- ① 一般家口 : 원칙적으로 血緣關係를 갖는 2명 이상이 生計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일반적인 가구의 개념)
- ② 1人家口 : 혼자서 방을 빌어 自炊하는 경우, 또는 雇用主는 出退勤하고 1명의 從業員이 營業場所에서 居住하는 경우
- ③ 非血緣家口 : 血緣關係를 갖지 않은 5명 이하의 從業員이 함께 宿食을 하는 경우(6명 이상의 경우에는 寄宿舍, 保育院, 養老院, 軍部隊 등과 같은 集團家口로 취급하여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調査對象者는 家口主와 家口主의 配偶者로 하였으며, 이를 調査對象者로 限定한 이유는 墓地制度의 개선방안을 樹立하는 데 가장 合理的이고 妥當性있는 意見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墓地問題를 바로 알고 있을 集團으로 假定하였기 때문이다.

나. 調査規模

섬地域을 제외한 全國의 1990年 人口總調査의 調査區와 1990年 人口總調査 이후 1994年 4月 30日까지의 新築아파트에서 抽出한 99개 標本調査區에서 調査하였으며, 92.1%에 해당하는 2,734명에 대하여 調査를 完了하였다(標本抽出에 관한 細部內容은 第2節 標本設計概要 참조).

2. 現地 調査

가. 調査要員 訓練 및 調査期間

99개 標本調査區가 추출된 邑·面·洞의 社會福祉業務를 擔當하는 社會福祉士(別定職 7級)를 調査要員으로 活用하여 調査하였으며, 調査要員에 대한 教育은 全國을 3개 地域으로 나누어 地域別로 1日씩 研究者가 직접 教育을 實施하였다.

教育內容은 調査目的, 調査區 境界線確認 및 家口名簿 作成要領, 標本家口 및 調査對象者 選定方法, 調査票 作成方法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現地調査는 1994.7.25.~8.6.까지의 期間中 教育實施 지역별로 서로 다른 6日間에 실시하였다.

나. 調査方法

調査要員은 配付된 調査區 境界線 資料를 근거로 擔當 調査區의 境界線을 確認한 다음, 調査區 內의 모든 建物 및 施設物(假建物, 비닐하우스 등)을 訪問하여 사람의 居住與否를 확인하여 家口名簿를 作成하고, 첫번째 家口부터 30家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였다. 그리고 첫번째 家口부터 15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를 調査對象者로 選定하여 調査하였으며, 16번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의 配偶者를 調査對象者로 選定하여 調査하였다(家口主의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는 家口主를 調査하였음).

調査는 調査要員이 직접 面接調査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하여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調査對象者가 직접 調査票를記入토록 의뢰하고 다음 날에 調査票를 回收하였으며, 回收過程에서 記入內容을 確認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調査한 結果, 2,970명 중에서 92.1%에 해당하는 2,734명에 대하여 調査票를 作成하였으며, 이에 관한 細部 內譯은 <表 2-1>과 같다.

<表 2-1> 市部·郡部別 調査結果 內譯

지역	표본 조사구수	가구수	표본 가구수	표본대상자수			조사 완료율 (%)	표본 ¹⁾ 비율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계	99	7,136	2,970	2,970	2,734	236	92.05	1/4,573
시 부	61	4,433	1,830	1,830	1,684	146	92.02	1/5,718
군 부	38	2,703	1,140	1,140	1,050	90	92.10	1/2,706

註: 1) 각 표본조사구별로 標本對象者 중에서 調査完了 대상자를 標本으로 抽出한 것으로 가정하고 算出한 全體 標本比率임.

3. 調査內容

主要 調査內容은 국민의 墓地制度에 대한 意識과 묘지사용 行態를 把握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應答者의 人口 및 社會學的 特性
- 墓地問題에 대한 意識
- 墓地制度 관련 法規에 대한 認知度 및 向後 改正에 따른 遵守 態度
- 墓地에 관한 一般的인 態度
- 父母의 墓地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祖上墓에 관한 實態
- 墓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識 및 縮小에 따른 適定面積
- 墓地選定에 作用하는 諸般 要因
- 火葬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納骨堂(墓)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個人墓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子孫에 대한 墓地管理 期待 意識
- 墓地基地權, 墓地豫約制, 時限附 墓地制, 墓地 一齊申告, 墓地 造成 地域 等에 대한 意識 및 態度
- 國民 意識變化를 위한 弘報·啓蒙에 관한 意見

4. 推定方法

이 調査結果에 의한 各種 統計値는 調査完了된 2,734명을 基準으로 한 加重標本合計値(weighted sample total)와 이를 基礎로 한 平均 및 構成比이다. 여기서 調査完了된 結果를 그대로 合算한 單純標本合計値(simple sample total)를 使用하지 않고 加重標本合計値를 算出한 理由는 各 標本 調査區가 標本으로 抽出된 確率이 서로 다르고 各 調査區에서 標本家口가 標本으로 抽出된 確率이 調査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調査完了率도 調査區마다 다르므로, 이에 따른 調査區別 加重値를 適用하는 것이 妥當하기 때문이다(구체적인 算出公式은 第2節 標本設計概要 참조).

5. 資料處理

이 調査는 墓地政策 수립에 필요한 資料蒐集이 主目的으로 주요 問題點에 대한 國民의 意見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한 것으로 記述的인 分析 (Descriptive Analysis)에 局限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各 설문의 單純頻度表와 관련 내용간의 交叉分析表를 提示하였다. 또한 조사 結果의 分析 및 各種 統計表는 單순표본합계치가 아닌 加중표본합계치와 이를 근거로 한 構成比를 사용하였다.

第 2 節 標本設計 概要

1. 考慮된 事項

가. 基礎資料

標本調査區 抽出을 위한 基礎資料로는 基本的으로 1990年 人口總調査의 調査區 資料 이외에는 다른 資料가 없으므로, 1990年 人口總調査의 調査區를 利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標本으로 抽出된 調査區의 境界線 안에 1990年 人口總調査 이후에 住宅이 많이 新築되었을 때(특히 아파트가 新築되었을 때)에는 家口數가 많이 增加하게 되어 境界線 안의 모든 家口를 다 調査하는 것이 困難하게 된다. 이러한 危險負擔을 조금이라도 減少시키기 위하여 資料收集이 가능한 1990年 人口總調査 이후의 新築아파트에 대하여는 별도의 標本 調査區를 抽出기로 하였다.

나. 標本規模

標本規模는 주어진 豫算과 調査員當 1日 業務量 등을 考慮하여 標本 調査區數는 99개 調査區로 하고, 調査區當 30家口씩 총 2,970家口에서 각각 家口主 또는 配偶者 1명씩 총 2,970명을 抽出기로 하였다.

다. 市部·郡部別 標本調査區數

99개의 標本調査區를 地域을 除外한 市部·郡部別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하면 市部에 76개 調査區와 郡部에 23개 調査區가 配分된다. 그런데, 市部·郡部別 推定値가 필수적임을 考慮하면 郡部에는 標本調査區가 근본적으로 적어 실제로 活用價值가 있는 資料의 生産이 困難하므로, 郡部에는 2배의 加重値를 주어 市部에서 61개 調査區와 郡部에서 38개 調査

區를 抽出키로 하였다(市部 $99 \times 76 / (99 + 23) = 61$, 郡部 $99 \times (23 + 23) / (99 + 23) = 38$). 그리고 99개 標本調査區 중에서 4개 調査區(시부 3개 調査區, 군부 1개 調査區)는 新築아파트에서 抽出키로 하였다.

2. 標本調査區의 抽出

가. 1990年 人口總調査區를 이용한 標本調査區 抽出

1990년 人口總調査의 調査區別 要計表 資料에서 施設單位 調査區와 濟州道를 포함한 모든 地域의 調査區를 除外한 普通調査區(183,292개 調査區)를 市部, 邑部, 面部의 順序로 1次 分類하였다(1992年 2月 1日에 高陽市로 昇格된 高陽郡은 市部로 포함).

市部, 邑部, 面部에서는 각각 單獨住宅이 가장 많은 調査區, 아파트가 가장 많은 調査區, 聯立 및 多世帶住宅이 가장 많은 調査區, 기타 調査區의 順序로 2次 分類하였으며, 각 2次 分類 내에서는 다시 洞邑面 單位까지의 行政區域 番號와 調査區番號 順序로 分類하였다. 이와 같은 順序로 調査區를 分類한 다음, 각 調査區에는 그 調査區의 人口總調査 家口數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結果를 크기의 測度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市部에서 58개 標本調査區와 郡部에서 37개의 標本調査區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다. 郡部の 경우에는 標本調査區를 邑部에서 먼저 抽出하고 連續하여 面部에서 抽出하였다.

나. 新築아파트의 標本調査區 抽出

1990年 人口總調査 이후 1994年 4月 30日까지의 모든 地域(濟州道 포함)을 除外한 지역의 新築아파트 家口數를 收集하여 정리한 結果, 市部에 807,330家口分과 郡部에 120,460家口分の 아파트가 新築되었다(따라서 調査區당 가구수를 70家口로 하면 市部 11,533調査區, 郡部 1,721調査區가 된다).

이들 아파트를 市部와 郡部別로 각각 行政區域番號 순서로 羅列하고 10 家口를 1單位로 하는 크기의 測度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市部에서 3개의 아파트와 郡部에서 1개의 아파트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任意 抽出하였다. 그리고, 標本으로 抽出된 아파트에서는 家口數가 비슷하게 되도록 크기의 測度와 같은 수의 區域을 設定하여 層 또는 階段을 따라 인접한 7개의 區域을 統合하여 標本調査區로 하였다.

다.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1990年 人口總調査의 調査區와 1990年 人口總調査 이후의 新築아파트에서 標本調査區를 抽出한 內譯을 정리한 結果는 <表 2-2>와 같다.

<表 2-2>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細部內譯

기초자료	조사구수	크기의 측도	표 본		
			조사구 수	크기의 측도	기초자료 가구수
인구총조사 조사구					
시 부	138,380	850,465	58	407	4,054
군 부	43,912	272,364	37	262	2,586
신축아파트					
시 부	11,533	80,733	3	22	222
군 부	1,721	12,046	1	7	73
계	196,546	1,215,608	99	698	6,935

3. 標本家口 및 對象者の 抽出

現地調査段階에서 調査要員이 調査區의 境界線을 確認한 다음, 調査區 境界線 내의 모든 家口의 家口名簿를 작성한 다음, 첫번째 家口부터 30家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였다. 그리고 첫번째 家口부터 15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를 調査토록 하였으며, 16번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의 配偶者를 調査토록 하였다. 이 때, 家口主의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는 家口主를 調査토록 하였다.

標本家口の 選定에서 標本家口를 系統抽出하거나 單純任意抽出하는 方法도 있으나, 調査區 内の 家口名簿作成 및 標本家口の 選定은 現地調査 要員이 하여야 함으로 標本家口 抽出節次는 加급적 單純하여야 한다. 그런데 系統抽出의 경우에는 抽出間隔을 計算하고 이 抽出間隔을 적용하여 標本家口를 抽出하여야 하며, 單純任意抽出의 경우에는 亂數表를 사용하여 하는 등 복잡하므로, 家口名簿에서 첫번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는 가장 單純한 方法을 택하였다.

4. 推定方法

이 調査結果에 의한 各種 統計値는 調査完了된 2,734명을 基準으로 한 加重標本合計值(weighted sample total)와 이를 基礎로 한 平均 및 構成比 이다. 여기서 加重標本合計値는 다음과 같이 算出하였다.

$$X' = \sum_h \sum_i M'_{hi} X_{hi}$$

$$M'_{hi} = M_{hi} (A / \sum_h \sum_i M_{hi} A_{hi})$$

$$M_{hi} = (S_h / n_{hi} S_{hi}) (A'_{hi} / A_{hi})$$

위의 공식에서

X' = 어떤 特性 X 를 갖는 對象者數의 加重標本合計値

X = 特性 X 를 갖는 것으로 調査된 對象者數

M' = 加重標本合計値 算出用 乘數

M = 調査母集團의 總家口數 推定用 乘數

A' = 家口數(標本+非標本)

A = 標本으로 選定된 調査對象者 中の 調査完了 對象者數

n = 標本調査區數

S = 크기의 測度

h = 層(기초자료의 종류 및 시부·군부)을 나타내는 添字

i = 標本調査區를 나타내는 添字

第 3 節 先行研究

埋葬爲主의 傳統的인 葬墓慣行을 改善하고, 效率的인 墓地制度를 樹立하기 위한 先行研究는 關係當局을 비롯하여 學界, 研究機關 等 여러분야에서 遂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그간 國內에서 이루어진 調查研究 結果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한다.

1. 制度改善을 위한 研究

그간 이루어진 研究中 制度改善을 목적으로 한 研究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墓制上的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實際改善하고자 하는 制度 內容에 대한 國民의 意見을 調査한 研究는 制限되어 있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가. 行政資料를 통해 묘지제도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개선점을 提示한 연구로, 個人墓를 抑制하고 묘지면적을 縮小하기 위해서는 공·사설 集團墓地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關聯 法規를 개정하고 이를 社會指導層이 率先垂範하여 지키도록 한다. 공설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묘) 확대설치를 위해 정부의 豫算을 擴大支援하고, 학교교육 등을 통해 啓蒙을 하여 제도개선의 成果를 提高한다(朴輔均, 1983).

나. 文獻을 통한 묘지제도 考察과, 行政資料를 통해 實態를 파악하고, 全國 規模로 1,860명을 대상으로 墓制에 대한 問題意識, 葬禮類型, 省墓行態 및 改善方案 等에 대한 設問調査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不法墓, 無緣故墓의 實態 把握을 위해 一齊申告를 하도록 하고, 新規 묘지 設置基準을 強化하며, 墳墓 1기당 일반 묘의 경우 30m²/기, 집단묘지는 6m²/기로 縮小하면 약 320km²의 면적 縮小效果가 있으므로 適定面積 基準으로 축소토록 한다. 또한 사설공원묘지, 납

- 골당(묘) 設置基準을 強化하여 環境을 개선토록 하며, 傳統的 意識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弘報·啓蒙을 실시할 것을 提示하였다. 主要結果는 本 研究資料와 함께 比較說明하였다(尹陽洙 外, 1987).
- 다. 묘지면적의 縮小, 사설 개인묘지 許可抑制, 時限附墓地制 도입, 묘지의 集團化 등을 위해 現行제도를 개선하고, 無緣墳墓 정비를 위한 墓地申告制 도입 등 管理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을 行政資料 分析을 통해 提示하였다(鄭義澤, 1990).
- 라. 參考文獻, 行政資料를 통해 문제점을 導出하고, 경기도 일원의 指導層, 學生, 農民 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結果로 公園墓地를 확대 設置하여 墓地를 集團化함으로써 토지의 利用效果를 높일 것을 提示하고 있다(李判石, 1973).
- 마.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行政資料를 통해 묘지 법률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補完하고, 묘지에 대한 문제를 國民에게 啓蒙하여 葬法을 改善할 것을 제시하였다(高仁德, 1991).
- 바. 參考文獻, 行政統計資料를 통해 火葬率을 제고하기 위해 政策的으로 제도를 強化하고, 既存의 無緣故墓, 不法墓를 정비하기 위한 方法을 摸索하며, 시설묘지를 政策적으로 支援하여 改善할 것을 主觀的인 觀點에서 제시하였다(朴洪潤, 1985).
- 사. 墓地制度 전반에 관한 改善을 目的으로 1982~1991년까지 6차례 걸쳐 住民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國民的 合意를 위해 계몽을 強化하고, 전국묘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無緣墳墓, 不法墓를 찾아내어 整備하며, 公園墓地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여 집단묘지 利用率을 높이고, 火葬率 提高를 위해 政策을 開發하며, 社會指導層이 率先垂範 할 것을 建議하고 있다. 主要結果는 본문에 比較說明하였다(金泰福, 1992).
- 아. 墓地로 인해 發生되는 山地所有 및 諸般 問題를 문헌 및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導出하여 改善方案을 提示한 것으로 林野所有의 歷史的 變遷, 墓地慣行의 변화와 當面課題, 墓地로 인한 山地 利用上의 諸問題, 墓地의 山地蠶食 實態, 墓地政策의 評價, 墓地制度의

改善方案 등을 제시하였다(金聖昊 外, 1990).

2. 墓地制度에 대한 歷史的 考察

他 研究報告書에서도 일부 묘지제도에 관한 歷史的 考察을 언급하였지만 本書는 朝鮮時代의 墓制를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묘지의 변천과 정도 함께 考察하였다. 조선시대의 王墓, 民墓에 대하여 考察하였고, 葬墓方法의 종류와 내용, 조선시대 양반들이 火葬을 禁止한 事由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提示하였다(崔虎林, 1983).

3. 火葬場 運營改善을 위한 研究

墓地難을 겪고 있는 일부 都市의 경우 墓地難을 解決하기 위해 火葬場을 設置 運營하고 있다. 이러한 施設에 대한 運營을 改善하기 위해 研究한 資料이지만 火葬率 提高를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자료로는 制限性(行政資料만을 통한 問題點 導出)을 가지고 있다.

가. 釜山地域을 중심으로 한 資料로 火葬場 設置는 市民의 協助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地域 住民의 집단 利己主義로 인해 장소물색이 어려우나 巨視的 次元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必要性을 제시하고 있다(金參官, 1983).

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火葬場 운영의 문제점을 把握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火葬은 墓地問題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인식부족으로 당대에는 擴大가 어렵다. 따라서 埋葬制度和 火葬제도가 양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火葬率 提高를 위해 火葬場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고, 민간위탁 경영체제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火葬後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한다면 效果가 클 것이고, 따라서 納骨墓, 納骨堂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이다(許完, 1983).

4. 外國의 墓地制度에 대한 考察

우리나라의 墓地制度를 개선하기 위한 研究의 일환으로 外國의 墓地制度를 考察한 것과, 先進國의 葬墓文化를 研修한 보고서도 포함하였다. 이 조사자료와 比較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本文에 제시하였고 具體的인 制度 比較는 3章에서 提示하였다.

- 가.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일본, 대만,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사모아 등 국가의 묘지제도 고찰(金國道, 1983).
- 나. 서울과 프랑스 파리와의 묘지문제를 文化的, 意識的인 次元에서 比較한 결과 類似한 문제를 內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時限附 墓地制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實態와(洪錫基, 1994.5) 또한 프랑스의 火葬歷史, 火葬 利用現況과 화장재 처리, 火葬에 대한 규정,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 등을 記述하였다(洪錫基, 1994.7).
- 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3개국의 墓地 見學 및 制度를 研修하여 각국의 제도와 실태를 記述하였고(강원도, 1983), 미국, 캐나다에 대한 제도와 실태에 관해서도 記述하였다(보건사회부, 1994).

5. 其他 研究

以外에도 많은 研究가 施行되었으나 내용적으로 重複된 것은 分析에서 除外하였고, 本 研究에 참고가 될 資料만 收錄하였다.

- 가. 地理學的 측면에서 土地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관행적, 제도적, 토지이용, 의식구조 면에서 問題點 指摘 및 改善點을 提示(金富植, 1992).
- 나. 風水地理學의 由來, 현대의 풍수관에 대하여 言及(朱廣錫, 1992).
- 다. 法律的인 문제에 국한하여 墓地所有權, 墓地附屬物 所有權, 慣習法上 墳墓基地權,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점차적으로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을 提示(趙宗植, 1992).
- 라. 豪華不法墓地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을 指摘(趙宗植, 1992).

第 3 章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

第 1 節 應答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

1. 人口學的 特性

調査對象은 一般家口와 1人家口, 非血緣家口를 포함하여 家口主 또는 配偶者로 하였다. 그 결과 전체 2,734가구 중 家口主의 應答率은 60.7%, 配偶者는 38.1%, 1人 및 非血緣家口에서 답한 경우는 1.2%이었다.

應答者의 人口學的 特性을 <表 3-1>에서 보면, 性比에 있어서는 비슷한 分布이고, 年齡은 30代群이 32.3%, 40代가 25.8%, 50代 18.1%의 順이고, 郡部의 年齡層이 높은 分布를 보였다. 應答者 또는 應答者의 家口主가 長孫인 가구는 39.3%이고 父母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가구에 있어 應答者가 父母를 모시고 있는 家口는 26.4%, 돌아가신 父母를 모신 家口는 36.3%로 나타났으며, 郡部에서 父母를 모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2. 社會學的 特性

應答者의 社會學的 特性은 <表 3-2>와 같다. 宗教別 분포는 佛敎 31.1%, 天主教를 포함한 基督敎 26.9%, 儒敎 2.7%의 분포이고 宗教가 없는 群은 38.4%로 나타났다. 學歷은 中卒 이하가 40.4%로 郡部에서 教育水準이 비교적 낮은 分布를 보였고, 職業은 事務職이 22.2%, 서비스근로자 및 商店과 市場 販賣勤勞者 18.9%, 農業 및 漁業 熟練勤勞者가 12.4% (農村의 主婦 포함)의 順으로 다양한 職種 分布를 보였다.

<表 3-1> 應答者の 人口學的 特性

특 성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성 별						
계	100.0	2,734	100.0	2,111	100.0	623
남	51.0	1,394	49.3	1,041	56.5	352
녀	49.0	1,340	50.7	1,069	43.5	271
응답자구분						
계	100.0	2,734	100.0	2,111	100.0	623
가구주	60.7	1,659	58.3	1,230	68.9	429
배우자	38.1	1,041	40.5	856	29.7	185
기 타	1.2	33	1.2	25	1.4	9
연 령						
계	100.0	2,718	100.0	2,096	100.0	622
<20	0.3	8	0.3	6	0.3	2
20~29	10.9	297	12.0	251	7.5	47
30~39	32.3	877	36.0	754	19.7	123
40~49	25.6	696	27.2	570	20.4	127
50~59	18.1	491	16.3	343	23.8	148
60~69	9.1	246	5.9	123	19.8	123
70+	3.8	103	2.4	50	8.5	53
장손여부						
계	100.0	2,682	100.0	2,076	100.0	606
장손이다	39.3	1,054	38.2	794	42.9	260
아니다	60.7	1,628	61.8	1,282	57.1	346
부모와의 동거여부 ²⁾						
계	100.0	1,731	100.0	1,434	100.0	297
우리가 모시고있다	26.4	457	22.7	325	44.4	132
장손이 모시고있다	24.7	427	24.8	356	23.9	71
독립해 계신다	42.8	740	46.2	662	26.3	78
기 타	6.1	107	6.3	91	5.4	16
부모와의 동거여부 ³⁾						
계	100.0	1,797	100.0	1,305	100.0	492
우리가 모셨다	36.3	652	31.4	410	49.2	242
장손이 모셨다	38.8	697	39.7	518	36.4	179
독립해 계셨다	21.0	377	24.8	323	11.0	54
기 타	4.0	70	4.1	54	3.3	1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비해당 포함)한 응답자수

2)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분의 경우 현재 누가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

3) 돌아가신 경우 누가 모셨는가에 대한 설문

<表 3-2> 應答者の 社會學的 特性

특 성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종 교						
계	100.0	2,720	100.0	2,100	100.0	620
없다	38.4	1,045	37.1	780	42.7	256
기독교	26.9	733	28.9	606	20.3	126
불교	31.1	846	31.0	650	31.6	196
유교	2.7	72	2.1	45	4.4	27
기타	1.0	26	0.9	19	1.0	6
학 력						
계	100.0	2,722	100.0	2,102	100.0	621
중졸이하	40.4	1,100	32.3	679	68.0	422
고졸	40.2	1,095	44.2	928	26.7	166
대졸이상	19.4	527	23.5	494	5.3	33
직 업						
계	100.0	2,653	100.0	2,042	100.0	6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2.3	62	3.0	61	0.2	1
전문직	3.2	84	3.5	72	1.9	12
기술공 및 준전문직	4.7	125	5.5	112	2.1	13
사무직	22.2	589	26.2	536	8.8	54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8.9	501	20.9	428	12.1	74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2.4	328	1.8	36	47.9	292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9.5	252	10.6	217	5.8	3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3	168	7.2	148	3.3	20
단순노무직	7.5	198	8.6	175	3.8	23
무 직	13.0	344	12.6	258	14.1	8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第 2 節 墓地制度에 관한 意識行態

1. 墓地問題에 관한 意識

우리나라의 葬墓慣行은 埋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國土의 占有率이 높고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 墓地의 문제점으로 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相應하는 문제점은 墳墓 1基當 평균 占有面積이 불필요하게 넓고, 外國에 비해서도 월등히 넓은 것이다. 以外에도 一部 私設公園墓地의 경우 묘지가격이 비싸(공설묘지가격의 10배 정도)서 서민들이 利用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自然景觀을 毀損하며, 일부계층의 豪華墓 造成은 國民階層間에 違和感을 조성하는 등이 현재 墓地가 안고 있는 問題이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묘지가 차지하는 面積에 대하여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해 설문한 “우리나라의 國土는 좁은데 비해 墓地面積이 계속 增加하고 있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응답분포를 <表 3-3>에서 보면 “墓地問題가 深刻하니 國家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問題로 意識하고 있는 群은 전체 70.7%로 市部에서 월등히 높은 分布를 보였으며, 아직 問題가 아니라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은 전체 12.2%이고, 個人墓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郡部의 경우 市部보다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類似한 調查資料(尹陽洙 外, 1987)에는 應答者의 70% 이상이 묘지의 擴散과 土地의 非效率的 利用 등에 관하여 問題 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맥락에서 '82, '87, '89년에 조사한 자료(김태복, 1982, 1987, 1989)에는 각각 39%, 50%, 78.3%가 墓地問題를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問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意識은 반드시 行動으로 연결되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問題를 改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常識임에도 以上과 같이 墓地問題에 관하여 意識을 같이 하면서도 改善하고자 하는 行動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데 問題가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

겠지만 墓地를 잘 써서 本人과 子孫이 복을 받는다는 風水地理思想과 傳統的인 儒敎思想이 主原因이라 하겠다.

<表 3-3> 墓地面積 增加에 관한 問題意識

의 식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12	100.0	2,094	100.0	617
문제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0.7	1,918	74.2	1,554	59.1	365
문제는 되지만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17.0	462	15.9	334	20.7	128
아직 문제는 아니다	10.8	293	9.0	188	17.0	105
전혀 문제가 안된다	1.4	39	0.9	19	3.2	2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이러한 問題意識과 관련하여 應答者 中 爽을 당하여 墓地問題로 어려움을 겪은 집단의 經驗內容을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한 設問에 전체 應答者 2,689명 중 10.2%(274가구)가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문제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16가구를 除外한 258가구의 問題內容은 <表 3-4>와 같다. 문제내용 중 墓地購入이 어려웠다가 48.2%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郡部에서 높은 分布를 보였는데 이는 地域 여건상 集團墓를 구하기보다 個人墓 구하기가 容易하지만, 자기소유의 土地가 없거나 緣故地가 아닌 地域에 居住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解析되며, 그러한 集團에 비한다면 市部에서의 集團墓 구입이 容易한 것으로도 解析이 된다. 다음 順으로는 墓地價格이 너무 비싸다가 35.2%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應答者의 90% 정도가 問題를 經驗하지 않았다는 것은 墓地問題가 皮부로 느낄 정도의 狀況이 아님을 나타낸 것으로도 解析되지만 墓地에 관한 關心이 적음도 排除할 수 없다.

<表 3-4> 喪을 당하여 겪은 問題內容

문제내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58	100.0	204	100.0	54
묘지구입이 어려웠다	48.2	124	44.6	91	61.1	33
묘지가격이 너무비싸다	35.2	91	37.7	77	25.9	14
명당자리 구입이 어렵다	0.9	2	1.0	2	-	-
장례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	12.7	33	13.7	28	9.3	5
기 타	3.0	8	3.0	6	3.7	2

註: 1) 상을 당하여 문제경험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2,689명 중 274(10.2%)명이 경험자로 그 중 문제내용에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2. 墓地法規에 관한 認知度

1961년에 制定한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의 目的은 埋葬, 火葬 및 개장과 墓地, 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理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 및 公共福利의 增進을 寄與함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國民이 遵守해야 할 主要 事項은 埋葬 및 火葬의 時期, 場所 및 方法, 申告가 있고 이의 위반에 대한 罰則條項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지키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普遍的으로 어느 가정이고 喪을 당하면 死亡診斷書를 具備書類로 添附하여 死體埋葬(火葬)申告書를 提出하여 葬禮를 치르면 되는 것으로 일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慣行的으로 하고 있는 葬禮를 규제하고 있는 法律이 있는지 알고 있는 集團은 小數일 것이라는 假定下에 墓地管理法律 認知 與否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內容(신고 등)에 대한 認知與否를 알아보았다. 假定한 바와 같이 墓地管理를 위한 法律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應答한 群은 37.9%로 市部가 다소 높은 分布를 보였다(表 3-5 참조).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解釋이 되지만 법률이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그 원인을 類推해 볼 수 있으며, 法律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急激한

制度의 改善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3-5> 墓制關聯 法律 有無 認知度

인지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01	100.0	2,090	100.0	611
안 다	37.9	1,023	38.7	809	35.1	214
모른다	62.1	1,678	61.3	1,281	64.9	397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葬禮를 치를 때의 日常의인 절차는 墓地面積, 場所, 埋葬을 해당관청에 申告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規制有無 認知與否를 <表 3-6>에서 보면 묘지의 面積, 場所, 申告 등에 관하여 法的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群은 38.0%이고, 지역간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違反할 경우 罰金이나 處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群은 24.1%로 다른 認知率에 비해 낮았으나, 移葬(개장)을 포함하여 埋葬을 하려고 할 때 申告를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41.0%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역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法律 認知率에 비해 申告에 관한 設問의 認知率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申告는 규제 이전에 慣行的인 것이기에 나타난 것으로 解析된다.

法律制定 以前('61년)에 설치한 無許可 墓에 대해서는 經過措置로 陽性化시켰으나, 그 이후에 설치한 個人墓는 대부분 不法墓(김태복, 1992)로 나타나 있다. 不法墓를 썼다는 것은 緣故者들이 違法을 하였으며 법에 따라 措置가 된다면 많은사람이 違法者로서 처벌을 받았을 것이며 不法墓의 설치가 減少하거나 根絶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것은 法律에 대한 認知率이 낮은 것을 볼 때 당연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法이 法으로서 效力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主要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實效를 거둘 수 있는 法으로의 개정 必要性이 높다고 하겠다.

<表 3-6> 墓制關聯 規制有無 認知度

규제내용 및 인지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묘지관리 법률유무 인지여부						
계	100.0	2,701	100.0	2,090	100.0	611
안 다	37.9	1,023	38.7	809	35.1	214
모른다	62.1	1,678	61.3	1,281	64.9	397
묘지의 면적, 장소, 신고에 관한 법규 인지여부						
계	100.0	2,710	100.0	2,093	100.0	617
안 다	38.0	1,031	40.5	848	29.7	183
모른다	62.0	1,679	59.5	1,245	70.3	434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 인지여부						
계	100.0	2,702	100.0	2,084	100.0	618
안 다	24.1	652	25.1	523	20.9	129
모른다	75.9	2,050	74.9	1,561	79.1	489
매장, 개장(이장) 신고조항 인지여부						
계	100.0	2,709	100.0	2,091	100.0	618
안 다	43.4	1,177	46.0	962	34.7	215
모른다	56.6	1,532	54.0	1,129	65.3	403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法制에 대한 認知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不法의으로 써온 不法墓를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지 방법을 摸索하고자 한 설문의 應答 分布를 <表 3-7>에서 보면 罰金을 물리지 않고 許可난 곳으로 옮긴다가 38.7%로 가장 많고, 그대로 둔다가 24.8%로서 次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매우 寬大한 意思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全體墓의 70%(13백만기, 보건 사회부, 1994)가 個人墓로 이들 대부분이 不法墓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結果는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表 3-7> 不法墓 措置에 대한 意見

의 건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55	100.0	2,048	100.0	607
그대로 둔다	24.8	658	21.2	435	36.7	223
벌금을 물게하고 양성화 시킨다	12.7	336	12.7	260	12.5	76
벌금을 물게하고 허가난 묘지로 옮긴다	22.5	596	24.3	498	16.2	98
벌금을 물리지않고 허가난 곳으로 옮긴다	38.7	1,028	40.4	828	33.0	200
기 타	1.4	37	1.3	27	1.6	1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不法墓 設置를 막고 墓地 設置基準을 遵守토록 關聯法律의 規制事項을 強化할 경우 強化된 法律을 어느 정도 遵守하겠느냐?의 說問에 答한 分포를 <表 3-8>에서 보면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강하게 否定的인 의사를 나타낸 群이 25.8%로 우리의 傳統的인 葬墓慣行의 意識 속에 얼마나 크게 作用하고 있는지를 單적으로 理解할 수 있으며, 墓地制度 改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3-8> 墓地問題 解決을 위해 罰則을 強化할 경우에 관한 意見

의 건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57	100.0	2,057	100.0	600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25.8	686	24.1	497	31.5	189
지킬 수 없는 것이라도 대다수 의 사람이 지키면 지키겠다	49.5	1,314	49.2	1,013	50.3	301
주위사람 관계없이 지키겠다	24.7	657	26.6	547	18.2	11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3. 墓地面積에 관한 意識

國土의 面積이 우리나라보다 넓은 나라에서도 土地의 經濟的 利用價值를 높이기 위해 不必要하게 占有하고 있는 墓地의 面積을 最少化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 狀況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一般墓와 豪華墓로 구분하여 面積規模에 관한 意識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一般墓의 面積

一般墓라 함은 個人墓(문중, 가족묘 포함)와 集團墓(공·사설 공원묘)로서 一定基準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墓를 말한다. 현재 法律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기준 면적은 분묘 1기당 自然人的 個人墳墓는 1기당 80㎡(24평), 집단묘는 30㎡(9평) 이하인 것으로 法的인 基準自體가 外國(대부분 3~4㎡ 정도)에 비해 월등히 넓게 定하고 있다. 이러한 基準은 오늘에 있어 墓地問題를 深化시키는 問題의 한 要因이 되었다. 그 理由로 현재 분묘 1기당 차지하고 있는 平均 面積이 50㎡(966km²/19,228천기, 15평)로 集團墓의 基準을 크게 넘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된다.

개인묘의 墓地面積을 1기당 30㎡로, 集團墓는 6㎡로 縮小할 경우 全體 墓地面積의 약 320km²를 縮小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尹陽洙 外, 1987). 이와같이 墓地問題를 解決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案 중의 하나가 墓地面積을 縮小하는 것이라 하겠다.

墓地 面積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 意識은 風水地理나 특정한 思想에 따르지 않더라도 子息된 도리로는 陽地 바른 곳에 餘裕있는 터를 마련하여 부모님이나 祖上을 모시고, 온 家族이 만날 수 있는 場所로도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현재 개인묘의 점유율(70%)과 분묘 1기당 평균 면적(50㎡)을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國家의 長·短期的 發展計劃 次元에서 볼 때 墓地問題는 解決해야 하고 해결책의 하나는 묘지면적을 縮小하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 視覺에서 설문한 現在의 基準面積을 줄이고자 하는 데 대한 贊成與否를

<表 3-9>에서 보면 찬성이 46.1%이고,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現行 그대로가 좋다고 답한 응답을 52.4%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全體墓의 70% 이상이 個人墓임을 勘案할 때 當然한 결과로 解析이 되지만, 現行 그대로 持續이 된다면 墓地難을 겪어야 하는 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表 3-9> 現行 墓地面積 基準을 縮小하는 데 관한 意見

의 건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01	100.0	2,083	100.0	618
찬성한다	46.1	1,246	49.9	1,040	33.4	206
현행 그대로가 좋다	52.4	1,415	49.2	1,026	36.0	389
더 넓히는 것이 좋다	1.5	40	0.8	17	3.7	23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墓地の 基準面積을 外國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表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基準이 월등히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國土面積이 넓은 미국, 캐나다의 경우도 墓地가 滿場狀態에 있음에도 새로운 墓地를 造成하지 않고 캐나다의 경우 15년 時限附 埋葬制를 실시하고 祖上墓를 파괴하여 1m 정도 더 깊게 파고 祖上遺骨 위에 새 屍身을 安置하는 형태로 墓地를 再活用 하는 등 非生産의인 墓地面積을 縮小하거나 再活用 하고자 努力하는 外國의 實情(보건사회부, 1994)을 볼 때 우리의 묘지관리가 時代的으로 落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墓地面積을 現행 基準보다 縮小하는 것이 좋다고 應答한 集團(1,246)의 適定面積 規模를 <表 3-11>에서 보면 墳墓 1基當 平均面積은 2.9평이고, 1~3평 정도가 適正하다고 應答한 群이 76.7%로 나타났다.

墓地面積 縮小의 필요성을 認識하고 있는 集團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수정도로, 이 集團의 意見을 理想的인 基準으로 定할 수는 없지만 參考할 수는 있을 것이며, 外國의 實情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음을 勘案해야 할 것이다.

<表 3-10> 外國의 墓地面積 基準

국 명	1기당 면적(m ²)	비 고
한 국	집단묘지 30, 개인묘지 80	실제사용 평균면적은 50m ² (15평)임
일 본	4	
대 만	16	
홍 콩	3	집단묘의 경우
영 국	3.6	
미 국	2.9	공원묘지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네덜란드	3	
프 랑 스	2.5	공원묘지의 순수 분묘면적

<表 3-11> 墳墓 1基堂 適正面積 規模

적정면적 기준 (평)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1,152	100.0	956	100.0	196
1~3	76.7	884	77.7	743	71.9	141
4~6	22.0	253	21.2	203	25.5	50
7'	1.3	15	1.0	10	2.6	5
평균	2.9평					

註: 1) 묘지면적 축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1,246명 중 무응답 94명을 제외한 응답자수.

'82년도, '91년도에 실시한 墓池에 관한 意識調查資料(金泰福, 1982, 1992)에 나타난 適正面積은 '82년 調査 때는 3평 정도가 34%, 6평이 56%, 9평 8%, 9평 이상 2%로 나타난 것이 '91년 조사 때는 2평 이하 35.3%, 3평 이하 30.2%, 4평 이하 14.4%이고 1평 이하도 13.2%로 나타나 점차 面積縮小에 肯定的인 意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이 墓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識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希望的이나 政府가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면적은 集團墓池 9평(30m²)을 3평(10m²)으로, 自然人 個人墓池은 24평(80m²)을 6평(20m²) 이내로 縮小하고자 하는 기준이 얼마나 지켜질지 疑問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原因도 있

겠지만 墓地問題에 관해 어느 家庭이고 내집 문앞에 墓地가 들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意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墓와 集團墓의 기준에 差等を 두는 것은 나름대로 意義가 있겠으나 개인묘의 擴散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差等없이 하거나 差異를 最小化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死者를 위해 生者の 삶의 空間이 萎縮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前提下에 死者의 空間을 차별없이 한다면 墓地問題 해결은 물론 社會的 和合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國立墓地의 경우 士兵 墓域은 1평의 土地에다 火葬을, 將軍은 8평의 土地에다 埋葬을 執行하는 差別性을 두고 있다(오홍석, 1994). 따라서 살았을 때의 社會的 신분인 死後에도 이어지는 慣行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우선적으로 改善하고자 하는 實踐的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墓地面積 縮小를 위한 努力의 成果는 倍加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豪華墓의 面積

墓地面積에 대한 기준이 法으로 정하여 있다. 그러나 일부 階層에서는 법을 違反하면서 基準面積보다 수백배 이상까지의 面積을 確保하여 高價의 식물과 호화로운 석물을 설치하는 등 富와 權勢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려는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墓地는 평당 1,200만원을 넘어 투기와의 연결이 되어 社會의 病幣를 誘發하고 있다(趙宗植, 1992).

豪華墳墓의 規制로서 1976년 12월 18일에 行政制裁의 일환으로 公務員부터 장차 자기가 묻힐 土地를 王陵과 같이 만들거나 터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두는 事例가 없도록 指導 단속을 強化하도록 大統領이 지시한 이후 政府에서는 豪華墳墓處理指針을 마련하여 示達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豪華墳墓에 대해 是正措置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 豪華墓를 계속 쓰고 있어 規制措置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門中の 墓는 基準 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호화묘 규제대상에서 除外되어 있는 것도 問題點으로 지적이 된다.

이러한 豪華墓의 面積規模를 어느 정도로 認識하고 있는가에 대한 設問 結果를 <表 3-12>에서 보면 面積規模를 10~29평 정도를 호화묘라고 應答한 群이 7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基準面積 이상을 豪華墓로 보는 것이 아니라 必要 이상으로 넓은 것을 豪華墓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50평 이상도 14.8%이고,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2> 豪華墓로 인식하고 있는 面積基準

묘지면적 (평)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519	100.0	1,930	100.0	589
10~29	74.0	1,863	77.6	1,498	62.0	365
30~49	11.2	282	10.1	195	14.8	87
50~99	8.5	215	6.7	129	14.6	86
100평 이상	6.3	159	5.6	108	8.7	5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4. 墓地制度 改善에 관한 意識 및 態度

現行 墓地制度가 안고 있는 問題를 해결하고 새로운 묘지제도 樹立에 骨格이 되는 內容인 火葬制, 納骨墓(堂)制, 時限附 墓地制, 墓地 申告制, 墓地 再使用, 個人墓, 宗教와 風水地理, 墓地 造成地域, 墓地 基地權, 墓地 豫約制, 子孫에 대한 墓地管理 期待, 豪華墓, 共同墓地 措置, 弘報·啓蒙 戰略 等에 대한 意識과 行態를 重點으로 分析하였다.

가. 火葬制

火葬은 屍身을 태워 遺骨을 처리하는 葬法으로 火葬後의 遺骨은 뺑아서 바다, 강, 냇가에 흩어버리는 散骨과 용기에 담아 特定한 장소에 安置하거나 墓를 마련하여 埋葬하는 方法이 있다(鄭吉子, 1983).

火葬의 역사는 新石器時代 末부터 유럽 일대에서 행해졌던 葬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중국을 통하여 佛教와 함께 古代 國家가 形成될 무렵에 傳播되었다(鄭吉子, 1980)고 한다. 우리나라에 朱子學이 들어오기 전, 佛教가 護國佛教로서 國敎이던 高麗 以前에는 火葬하는 風習이 있었지만 高麗末 충렬왕 이후 朱子學의 傳來에 따라 佛教式 葬禮 즉 火葬이 禁止되고 朱子家禮에 의한 儒敎式 葬禮가 施行되었다. 이에 따라 兩班들은 葬禮期間이 길면 길수록 祖上에 대한 崇拜와 孝道의 깊이도 더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교적 葬日이 짧고 遺骨을 태우는 火葬을 禁止시키는 것은 당연한 結果였을 것이다(崔虎林, 1983). 이러한 慣習은 묘지문제를 解決해야 하는 현재에도 持續되고 있음을 낮은 火葬率(19.1%)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 墓地問題 해결을 위한 優先의인 방법의 하나로 火葬率 제고를 위한 努力을 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越等히 높은 火葬率을 보이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應答者의 火葬에 대한 贊成與否와 贊成한 집단과 反對한 집단의 관련 特性을 分析하여 보았다. <表 3-13>에 나타난 화장 찬성률을 보면 전체 應答者 2,719명 중 50.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火葬率의 增加를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結果로 解析되며, 市部에서 25% 정도 높게 나타나 地域間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3> 火葬 贊成率

찬성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19	100.0	2,090	100.0	621
찬 성	50.1	1,362	55.8	1,171	30.7	191
반 대	49.9	1,357	44.2	927	69.3	43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이를 年齡階層別로 보면(表 3-14 참조) 20~30代 群이 60.9%, 40~50代 群은 44.8%, 60代 이상 群은 31.7%로 年齡이 많을수록 火葬을 원치 않는

양상을 보였다.

<表 3-14> 年齡 階層別 火葬 贊成率

찬성여부	전 체		20~30대		40~50대		60~70대	
	%	N ¹⁾	%	N	%	N	%	N
계	100.0	2,702	100.0	1,175	100.0	1,180	100.0	347
찬성한다	50.1	1,354	60.9	715	44.8	529	31.7	110
반대한다	49.9	1,348	39.1	460	55.2	651	68.3	237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연령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또한 火葬을 찬성한 군의 제 특성을 <表 3-15>에서 보면, 찬성하는 이유로 國土面積이 좁으니 해야한다고 응답한 群이 61.4%로 가장 높아 墓地面積에 대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는 集團의 應答結果로 해석된다. 火葬을 찬성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實踐에 옮길 수 있는가를 間接的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한 “子孫에게 遺言을 하여서라도 火葬을 하겠느냐?”에 遺言하겠다고 응답한 群은 68.3%로 나타났으며, 遺言을 한다면 子孫들이 火葬해 줄 것으로 기대하느냐?의 설문에는 56.6%가 肯定的으로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火葬 後 遺骨處理 選好方法으로는 산, 강에 뿌린다가 50.7%로 가장 높고, 火葬을 이웃에게 권하겠느냐?의 설문에는 34.1%가 권하겠다고 답하였다. 父母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설문에는 本人은 火葬을 찬성하지만 부모님의 意思에 따르겠다고 응답한 群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地域別로는 전체적으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火葬率이 높은 日本의 경우 火葬場의 施設을 最高로 갖추고 周邊造景을 아름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公害없는 火葬爐를 설치하여 누구나 火葬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政府의 노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김태복, 1994). 이러한 努力은 우리도 본을 받는 것이 改善의 期間을 短縮할 수 있을 것이다.

<表 3-15> 火葬을 贊成하는 群의 諸特性

제 특 성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						
계	100.0	934	100.0	812	100.0	122
종교적인 이유	1.9	18	1.8	15	2.5	3
장례절차가 간단해서	15.3	143	15.0	121	18.0	22
자손에 기대볼가	12.1	113	12.7	103	8.2	10
자손이 없음	0.5	5	0.6	5	-	-
본인이 좋아서	4.4	41	4.4	36	4.1	5
국토가 좁아서	61.4	573	60.9	494	64.8	79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4.4	41	4.7	38	2.5	3
자손에게 화장 유언여부						
계	100.0	1,345	100.0	1,156	100.0	189
유언하겠다	68.3	919	69.7	806	59.9	113
하지않겠다	31.7	426	30.3	350	40.1	76
유언에 따른 자손들의 이행기대						
계	100.0	894	100.0	783	100.0	111
해줄 것이다	56.6	506	57.4	449	51.8	57
안할 것이다	5.5	49	4.9	38	9.7	11
모르겠다	37.9	339	37.7	296	38.5	43
화장후의 유골처리						
계	100.0	1,296	100.0	1,118	100.0	178
납골묘에	28.3	367	27.2	304	35.3	63
납골당에	18.8	244	19.9	222	12.4	22
산, 강에 뿌림	50.7	656	50.6	566	50.8	90
기타	2.2	29	2.3	26	1.5	3
화장을 이웃에게 권장여부						
계	100.0	1,339	100.0	1,152	100.0	187
권하겠다	34.1	456	34.8	401	29.4	55
권하지 않겠다	16.1	215	15.6	179	19.1	36
생각해 보겠다	49.9	668	49.6	572	51.4	96
부모님에 대한 화장의사						
계	100.0	999	100.0	877	100.0	122
나는 원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면 하지않겠다	28.4	284	28.8	253	25.4	31
나의 뜻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다	66.8	667	66.1	580	71.3	87
부모님을 설득하여 하겠다	2.0	20	2.2	19	0.8	1
기타	2.8	28	2.9	25	2.5	3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화장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1,362명 중 무응답 또는 비해당을 제외한 응답자수.

火葬을 하겠다고 決定하는 데의 根本背景은 國家의 政策에서보다는 當事者의 宗教的, 經濟的 그리고 가정문제 등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본다(홍석기, 1994). 이러한 觀點에서 가장 큰 決定要因으로 생각되는 宗教有無와 火葬 贊成與否와의 관계를 보면 응답자 2,706명 중 宗教가 있는 群(1,667명)의 火葬贊成率은 49.7%로 종교가 없는 群(50.8%)과 별 차이없이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의 宗教 종류별로 보면 天主教를 포함한 基督教이 54.9%로 他宗教의 贊成率보다 높은 分布를 보였으며, 火葬을 권장하는 佛教에서 오히려 낮은 分布를 보였다. 또한 火葬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儒敎의 경우 33.5%로 나타났다. 火葬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실천으로 옮길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 “화장해 줄 것을 자손에게 유언하겠느냐?”의 질문에 역시 基督教을 믿는다고 응답한 群이 71.5%로 가장 높고, 佛教는 68.4%로 나타났다(表 3-16). 또한 學歷別로는 大卒 이상 群이 61.7%, 高卒 57.4%, 中卒 이하 37.3%로 학력이 높을수록 贊成率도 높게 나타났다(表 3-17).

<表 3-16> 宗教別 火葬贊成 및 遺言 與否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 교		유 교		기 타		없 다	
	%	N ¹⁾	%	N	%	N	%	N	%	N	%	N
화장찬성여부												
계	100.0	2,706	100.0	731	100.0	838	100.0	72	100.0	26	100.0	1,039
찬 성	50.2	1,357	54.9	401	47.2	396	33.5	24	30.9	8	50.8	528
반 대	49.8	1,349	45.1	330	52.8	442	66.5	48	69.2	18	49.2	511
화장유언여부												
계	100.0	1,341	100.0	395	100.0	393	100.0	23	100.0	8	100.0	552
하겠다	68.3	916	71.1	281	68.4	269	64.2	15	62.5	5	66.3	346
하지않겠다	31.7	425	28.9	114	31.6	124	35.8	8	37.5	3	33.7	17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종교에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가톨릭(구교)교회에서는 1963年 로마 바티칸 敎皇廳에서 火葬의 사용을 認定함으로써 20세기 동안 禁忌해 온 火葬에 관한 意識變化의 轉換點이 되었다. 西歐 基督教 國家 중 火葬率이 낮은 프랑스의 경우 1985년 2.6%

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7.6%로 점차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國民의 42.6%가 宗教를 가지고 있으며 火葬을 반대하는 立場에 있는 儒敎는 2.8%를 차지하고 있지만(대한통계협회, 1992) 本 調査結果에 나타난 바와 같이 儒敎를 믿으면서 火葬을 贊成한다고 應答한 群이 33.5%이고, 火葬을 하더라도 納骨墓에 祖上을 모실 것을 권하고 있는 儒林의 입장(한국장묘연구회, 1993)을 볼 때 宗教로 인한 火葬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3-17> 學歷別 火葬 贊成率

찬성여부	전 체		증줄이하		고 줄		대줄이상	
	%	N ¹⁾	%	N	%	N	%	N
계	100.0	2,707	100.0	1,094	100.0	1,088	100.0	525
찬 성	50.1	1,357	37.3	408	57.4	625	61.7	324
반 대	49.9	1,350	62.7	686	42.6	463	38.3	20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학력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表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外國의 火葬率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火葬 贊成率이 기대보다 높고, 埋葬을 選好하는 율이 減少하는 것에 비해 火葬 選好率이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조남훈 외, 1993) 있으며, 宗教로 인한 障礙 要因이 적을 것을 豫測해 볼 때 火葬率은 계속적인 增加 趨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表 3-19 참조). 또한 風水地理에 따라 墓地를 選擇하는 등의 國民意識을 變化시키기 위한 弘報·啓蒙이 뒷받침되고, 納骨墓와 같은 施設이 擴充된다면 問題는 期待보다 쉽게 解決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3-18> 各國의 火葬率比較

국	명	화장률(%)
한	국	19
일	본	97
태	국	90
홍	콩	72
스	위 스	67
영	국	69
네	덜 란 드	98
스	웨 덴	65
프	랑 스	8

資料: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내부자료, 1994(타참고자료간에 1~2%의 차이가 있음).

<表 3-19> 우리나라의 年度別 火葬率 推移

연 도	1971	1980	1990	1992	1993
화장률(%)	7.0	13.9	17.5	18.4	19.1

註: 화장률 연간 약 0.5%씩 증가.

資料: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내부자료, 1994.

火葬을 반대한다고 應答한 1,357명의 제특성을 <表 3-20>에서 보면 火葬을 반대하는 理由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가 30.0%로 가장 많고, 傳統의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에 20.6%,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19.5%의 順으로 나타나 儒敎的인 祭禮文化에 젖어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時代的인 環境變化에 따라 葬禮文化도 바뀌어 火葬을 하는 事例가 많아진다면 그 때 火葬을 반대하는 意思를 바꾸실 意向이 없느냐?의 질문에 바꾸겠다고 肯定的인 意思를 표한 群은 7.4%에 불과하고 끝까지 바꾸지 않겠다고 답한 群은 44.5%로 나타났다. 또한 火葬을 하는 데 있어 問題點을 改善한다면 火葬을 贊成하겠느냐?의 질문에 좋은 방법이면 따르겠다고 답한군이 15.7%, 생각해 보겠다고 答한 群은 41.3%로 火葬에 대한 弘報·啓蒙과 함께 施設의 現代化와 擴充은 火葬率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부모님이 火葬을 원하셔도 따르지 않겠다고答한 群(38.3%)을 비롯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에도 화장 反對意思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한 集團은 44.5%, 42.9%로 이는 全體 調查對象者의 21%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意識의 變化를 기대할 수 없는 集團으로 解析된다. 또한 本人은 火葬을 반대하더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子孫들이 火葬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設問에는 遺言을 하여서라도 적극 막겠다고 응답한 群이 18.5%로 다소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火葬을 반대하는 데 미치는 影響程度가 宗教有無와 宗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假定하여 反對理由와, 社會與件이 변하여 火葬하는 事例가 많아진다면 反對意思를 바꾸실 意向이 없는가?에 대한 意見을 <表 3-21>에서 보면 宗教가 없는 집단에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 反對한다고答한 群이 35.4%로 제일 많고, 기독교에서는 그와 함께 火葬하는 것이 무조건 싫어서가 24.2%로 같은 分布로 나타났으며, 佛敎에서도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니라서 反對한다고答한 群이 28.3%로 제일 많고, 두 번 죽는 것 같아서가 23.1%로 次順으로 나타났다. 儒敎에서는 전통적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에 反對한다고答한 群이 39.6%로 제일 많았다. 또한 앞으로 社會與件이 변하여 火葬을 하는 事例가 많아진다면 火葬 反對意思를 바꿀 意思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겠다고 응답한 群이 宗教가 없는 集團은 44.5%, 基督教 46.8%, 佛敎 42.2%, 儒敎 48.9%로 큰 차이없이 나타났다.

<表 3-20> 火葬을 反對하는 群의 諸特性

제 특 성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						
계	100.0	1,341	100.0	915	100.0	426
종교적인 교리때문	6.1	82	7.4	67	3.4	15
풍수지리설을 믿기때문	3.0	40	3.0	27	3.1	13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기때문	20.6	276	20.1	184	21.6	92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같아	30.0	401	31.6	289	26.4	112
자손들로부터 제사를 받지못해서	2.9	40	2.6	24	3.7	16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19.5	262	17.3	159	24.3	103
화장이 무조건 싫다	17.3	232	17.8	163	16.2	69
기 타	0.6	8	0.2	2	1.3	6
사회변화에 따라 의사전향여부						
계	100.0	1,336	100.0	910	100.0	426
바꾸지 않겠다	44.5	594	43.5	396	46.5	198
바꾸겠다	7.4	99	7.5	68	7.2	31
생각해보겠다	48.1	643	49.0	446	46.3	197
화장제 개선후 찬성의사여부						
계	100.0	1,339	100.0	916	100.0	423
절대로 원치않는다	42.9	575	40.4	370	48.4	205
좋은 방법이면 따르겠다	15.7	211	15.8	145	15.6	66
생각해보겠다	41.3	553	43.8	401	35.9	152
부모님이 화장을 원할경우 대처						
계	100.0	850	100.0	659	100.0	191
원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43.9	373	43.0	283	47.1	90
따르겠다	38.3	325	39.2	258	35.1	67
원하시더라도 하지않겠다	17.9	152	17.8	118	17.9	34
자손들이 부모를 화장하려는데 대한 의견						
계	100.0	1,330	100.0	422	100.0	908
유언을 해서라도 막겠다	18.5	216	15.8	143	24.3	103
원치않는다고 말할하겠다	40.1	533	43.3	393	33.1	140
원치않지만 따르겠다	22.8	304	22.7	207	23.1	97
자식이 하는대로 따르겠다	13.4	178	12.9	117	14.6	61
어떻게하든 관심이 없다	5.2	69	5.3	48	5.0	21

註: 1) 전체 응답자 2,718명 중 화장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1,357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表 3-21> 宗教別 火葬反對 理由와 向後 反對意思 轉向與否

구 분	전 체		기독교		불 교		유 교		기 타		없 다	
	%	N ¹⁾	%	N	%	N	%	N	%	N	%	N
화장반대이유 ²⁾												
계	100.0	1,333	100.0	326	100.0	438	100.0	48	100.0	16	100.0	505
이유1	6.2	82	20.6	67	1.6	7	2.1	1	1.2	1	1.2	6
이유2	3.1	41	1.8	6	4.3	19	2.1	1	2.6	2	2.6	13
이유3	20.4	272	11.7	38	26.0	114	39.6	19	19.8	1	19.8	100
이유4	30.0	400	24.2	79	28.3	124	27.1	13	35.4	5	35.4	179
이유5	3.0	40	3.7	12	3.2	14	-	-	2.8	-	2.8	14
이유6	19.6	262	13.8	45	23.1	101	18.7	9	20.6	3	20.6	104
이유7	17.2	229	23.3	76	13.0	57	10.4	5	17.2	4	17.2	87
이유8	0.5	7	0.9	3	0.5	2	-	-	0.4	-	0.4	2
화장반대의사 轉向여부												
계	100.0	1,325	100.0	323	100.0	434	100.0	45	100.0	17	100.0	506
바꾸지 않겠다	44.5	589	46.8	151	42.2	183	48.9	22	47.0	8	44.5	225
바꾸겠다	7.3	97	9.9	32	6.7	29	4.4	2	11.8	2	6.3	32
생각해 보겠다	48.2	639	43.3	140	51.1	434	46.7	21	41.2	7	49.2	506

註: 1) 전체 응답자 2,718명 중 화장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1,357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2) 이유1~이유8의 내용은 <表 3-20>의 반대 이유와 같음.

火葬은 강제로 要求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火葬을 해야만 하는 對象이 있다. 埋葬을 하고 싶어도 自己所有의 墓地를 확보할 수 없는 對象, 묘지를 維持, 管理할 수 없는 대상, 埋葬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對象 등은 火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對象에 대해 火葬 贊反에 대한 意思 結果를 <表 3-22>에서 보면, 緣故가 없는 死亡者에 대해서는 86.9%가 火葬을 하는 것이 좋다고 贊成意思를 표하였고, 傳染病 感染者, 收容施設의 無依託 老人 등의 順으로 贊成率이 높게 나타났다. 本 結果가 示唆하는 바는 緣故者가 없는 對象은 오히려 火葬을 하는 것이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象일지라도 強制的인 規定에 따라 火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強制的인 규정보다는 啓蒙을 통해 慣習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급속한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 西歐文化의 流入 등은 우리 자손들의 傳統의인 意識을 稀釋시킴으로써 葬墓慣行도 변할 것이며, 따라서 對象을 選別하기보다 本人의 要求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表 3-22> 火葬을 해야 할 對象者別 贊成率

대상자	전 체 (N=2,692) ¹⁾	시 부 (N=2,079)	군 부 (N=613)
연고가 없는 사망자	86.9	88.3	82.4
수용시설의 무의탁사망자	74.8	77.0	67.3
미혼 남,여 사망자	60.9	61.3	59.6
사산아	68.7	71.2	59.9
전염병 감염사망자	79.7	80.8	76.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火葬은 死者에 대한 處理 方法 중 環境 및 保健衛生學的 側面뿐만 아니라 土地消費(經濟的), 死後管理 면에서 편리하고 效果的인 葬禮方法이다. 이에 대한 범국민적 意識變化를 위한 啓蒙과 함께 社會指導層의 率先垂範이 함께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面積이 1백배나 큰 中國도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을 위해 指導者였던 호요방, 주은래 등은 火葬을 率先垂範 하였다고 한다.

나. 納骨墓 및 納骨堂 利用

納骨堂은 死體의 遺骨을 특정시설에 安置하는 것으로서 많은 遺骨을 安置할 수 있는 構造를 갖춘 地上 建築物이고, 納骨墓와는 큰 차이가 없으나 納骨墓는 地下構造物인 것이다.

火葬率이 가장 높은 日本의 경우 火葬한 遺骨은 대부분 遺骨函에 넣어 納骨堂에 모신다. 納骨堂은 住居地 인근에 設置되어 있어 利用이 便利하고, 嫌惡施設이 아니라 便宜施設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최신시설로 꾸며져 있다. 日本도 한때는 火葬을 禁止한 적이 있다. 그러나 宗教的인 意識을 떠나 좁은 國土內의 墓地問題는 火葬禁止를 解禁하고 墓地面積의

規制와 火葬場 및 納骨堂을 最新施設化 하고 弘報를 통해 利用率을 提高하여 이제는 慣行으로 定着되어 있다(藤井正雄, 1994).

우리나라는 全國적으로 44개소의 納骨堂이 公設 火葬場內에 부설로 또는 寺刹 境內, 法人 公園墓地內에 있다. 奉安 能力은 19萬 9千具로 '93년 말 현재 利用實績은 약 9萬具로 45%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實績이 낮은 데는 施設의 未備와 弘報不足의 原因도 있으나 火葬率이 낮은 것이 主 原因이라고 하겠다.

納骨堂과 같이 墓地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納骨墓를 擴大 보급하는 것이다. 納骨堂은 遺骨函을 建物內에 保管하는 것이지만 納骨墓는 땅에 保管하는 것으로 좁은 面積 안에 많은 基數의 遺骸를 모실 수 있고 家族墓등 집단으로 모실 경우의 長點은 크다. 또한 時限附 墓地制度가 導入이 되면 墓地에 埋葬한 후 一定期間이 지나 脫肉이 된 후면 火葬을 하지 않더라도 모실 수 있어 다른 墓制와 聯關하여 施設을 擴大普及한다면 效果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火葬을 反對하는 儒敎에서도 納骨墓 安置를 전제로 한 火葬은 肯定的인 평가를 하고 있어(한국장묘연구회, 1993) 이의 使用率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納骨墓와 納骨堂에 대해 國民의 認知度를 <表 3-23>에서 보면 예측한 바와 같이 23.6%만이 알고 있고, 市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납골묘(당)가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 對象에게 使用을 권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寒食, 秋夕 등 省墓時期에 大衆媒體를 통해 적극적으로 弘報를 하는 것이 效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納骨墓와 納骨堂이 어떤 것이라는 간단한 설명 후 長點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意見을 보면 '부족한 墓地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가 長點이라고 생각한 집단은 67.2%로 가장 높은 認知率을 보였고, 실제로 葬禮經費가 低廉한 것이 長點인데 반해, '葬禮에 따른 經費가 低廉하다'에 23.6%만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知識이 없어 나온 結果로 해석된다(表 3-24 참조).

<表 3-23> 納骨墓, 納骨堂 認知度

인지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94	100.0	2,080	100.0	614
알고 있다	23.6	636	24.5	509	20.6	127
모른다	38.9	1,047	35.7	742	49.7	305
조금은 알고있다	37.5	1,011	39.8	829	29.7	18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24> 納骨墓, 納骨堂의 長點에 대한 認知率

(단위 : %)

장 점 내 용	인지율 (N=2,626) ¹⁾
부족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7.2
먼곳까지 성묘를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다	31.1
장례에 따른 경비가 저렴하다	23.6
자연경관 훼손을 줄인다	35.8
국토이용률을 높인다	42.7
호화묘지등 허례허식을 줄일 수 있다	39.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아울러 家族 納骨墓, 納骨堂을 보급할 경우 사용하겠다고 應答한 群은 53.9%로 반수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족, 납골묘, 납골당 사용 시 火葬을 하겠느냐?의 설문에도 56.7%가 하겠다고 應答하여(表 3-25 참조) 앞으로 다양하고 발전적인 葬墓方法을 提示하고 弘報를 한다면 期待보다 빠른기간내에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納骨墓, 納骨堂의 施設 擴充을 위해 關聯法規의 規制緩和도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納骨墓는 외국에서 많이 活用하는 方法으로 一般墓와 같이 일정한 場所에 모실 수 있는 方法으로 이를 勸獎할 경우 사용하겠느냐?의 설문 결과를 <表 3-26>에서 보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否定的으로 應答한 群과 하겠

다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群의 分布는 각각 30.0%, 25.9%로 나타났으며, 하겠다고 응답한 群의 경우 祖上의 遺骨도 같은 곳으로 移葬 하겠느냐?에는 49.1%는 하겠다고, 38.4%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여 擴大 利用의 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表 3-25> 家族納骨墓(堂)를 普及할 경우 使用與否

사용 및 화장여부	%	N ¹⁾
사용여부		
계	100.0	2,663
사용하겠다	53.8	1,436
사용하지 않겠다	46.1	1,227
사용하겠다는 경우 화장여부		
계	100.0	1,436
화장을 하겠다	56.7	814
하지 않겠다	4.8	69
생각해보겠다	34.7	498
무응답	3.8	5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중 무응답 제외

<表 3-26> 納骨墓를 勸奨할 경우 使用與否

사용 및 이장여부	%	N ¹⁾
사용여부		
계	100.0	2,680
사용하겠다	30.0	804
사용하지 않겠다	25.9	694
생각해 보겠다	44.1	1,182
사용하겠다는 경우 이장여부		
계	100.0	804
조상의 유골도 이장	49.1	395
함께하지 않겠다	9.7	78
생각해보겠다	38.4	309
무응답	2.8	2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다. 時限附 墓地制度 導入에 대한 意識

公式的으로 時限附 埋葬制度가 언급되기는 보사부령 제623호(1991.7.5.)에 墓地의 永久使用 防止를 위하여 일정한 管理期間을 정하도록 勸獎事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集團公園墓地에 局限되는 短點을 보이고 있지만, 時限附 墓地制度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國民의 情緒上으로 볼 때 크나큰 發展이 아닐 수 없다.

세월이 지나 自然的으로 消滅되어 기억속에서 사라진다면 問題는 없지만 人爲的으로 死者에 대한 정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墓地를 없앤다면 당연히 副作用이 따를 것이다.

時限附 墓地制度를 導入하여 상당한 實效를 얻고 있는 國家는 프랑스로 5년을 基本 埋葬年限으로 하고 10, 30, 50, 100년을 緣故者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時限附 墓制導入에 있어 3차('87, '89, '91)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차 贊成率이 增加한 것을 보였고(김태복, 1992), 本 調査에 나타난 贊·反 分布를 <表 3-27>에서 보면 62.9%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部에서 다소 높은 分布를 보였다. 基本 埋葬 期間은 10~20년 미만이 27.2%로 가장 많고, 平均은 17.3년으로 나타났으며, 延長 平均回數는 2.3회로 나타났다.

時限附墓地制度는 묘지의 再活用과 連結이 된다. 時限으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遺骨을 정리하여 集團 納骨墓(堂)로 옮기고 옮겨간 자리를 墓地로 再活用하는 것이다. 이러한 長點으로 外國에서 많이 施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風水地理에 따라 터에 대한 差別意識은 남이 있었던 墓자리에 本人이나 父母 모시기를 忌避하고 있으며, 이는 制度 改善의 障礙要因이라 하겠다.

<表 3-27> 時限附 墓地制 導入 賛成與否와 埋葬期間 및 延長回數

내 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찬성여부						
계	100.0	2,665	100.0	2,058	100.0	607
찬성한다	62.9	1,676	64.3	1,324	58.0	352
반대한다	37.1	989	35.7	734	42.0	255
매장기간(년)						
계	100.0	1,491	100.0	1,173	100.0	318
<5	21.3	317	18.2	214	32.4	103
5~10	11.3	169	11.5	135	10.7	34
10~20	27.2	405	28.1	329	23.9	76
20~30	18.8	281	19.6	230	16.0	51
30*	21.4	319	22.6	265	17.0	54
평 균	(17.3)		(17.9)		(14.8)	
연장회수(회)						
계	100.0	1,427	100.0	1,119	100.0	309
0(연장불원)	2.5	35	2.4	27	2.6	8
1	44.0	628	44.4	497	42.4	131
2	33.1	473	33.4	374	32.0	99
3	14.1	201	13.5	151	16.2	50
4*	6.3	90	6.3	70	6.8	21
평 균	(2.3)		(2.4)		(2.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라. 墓地申告制 및 無緣故墓 整備에 대한 態度

埋葬(火葬)을 하기 위해서는 該當 官廳에 申告를 必해야만 가능토록 法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管轄 관청은 신고자료를 根據로 墓籍簿를 만들어 管理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移行이 不實하여 效率的인 墓地管理가 안되고 있으며, 더욱이 墓地管理를 위한 行政管理上의 組織, 人力이 부족하여 더욱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다.

現在 全國 墳墓의 약 1/4인 500萬基 이상이 無緣墳墓로 推定하고 있다. 이러한 墳墓는 緣故者가 없기에 전혀 管理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山地 景觀上 좋지 않으며, 山林資源의 效率的 利用에 障礙가 되는 등의 問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豪華墓를 索出할 수 있고, 墓地政策 樹立에 필요한 자료를 提供할 수 있는 분묘 일제신고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趣旨에서 墓地 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할 경우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설문의 應答分布를 <表 3-28>에서 보면, “기일내에 하겠다”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집단은 62.3%로 나타났고, 하지 않겠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집단은 5.3%로 本 制度의 施行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緣故者가 없는 墓地 整備에 있어서는 國民의 반대가 없을 것이며 그 效果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관내 無緣墳墓를 정비하여 集團墓地 30평 규모내에 8,926위를 納骨墓에 안치한 것이 그 效果를 뒷받침하고 있다(광주직할시, 1994).

<表 3-28> 墓地 일제 申告를 할 경우 期日內 申告與否

신고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76	100.0	2,068	100.0	608
기일내에 하겠다	62.3	1,668	62.9	1,301	60.4	367
하지 않겠다	5.3	141	4.4	91	8.3	50
생각해 보겠다	32.4	867	32.7	676	31.3	19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墓地 申告의 必要性和 效果가 클 것으로 判斷되어 묘를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규정을 強化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表 3-29>에서 보면 반드시 申告하도록 한다고 強制的인 意味를 內包한 응답에는 50.3%이고 강제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41.5%로 이는 強제적인 규제로까지 발전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表 3-29> 墓地申告制 強化에 대한 意見

의 건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03	100.0	2,087	100.0	616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50.3	1,360	52.7	1,099	42.4	261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41.5	1,121	40.3	841	45.5	280
할 필요가 없다	8.2	222	7.0	147	12.1	7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墓地申告制는 無緣墳墓를 정비하는 데 一次的인 目的이 있다. 現在 全國的으로 산재해 있는 無緣墳墓를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 應答 分布를 <表 3-30>에서 보면 85.3%가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肯定的으로 應答하고 있다. 整備時期는 빠를수록 좋다고 應答한 집단이 35.7%로 가장 많고, 整備方法은 集團 納骨堂으로 모두 移葬하는 것이 좋다고 應答한 群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墓地 所有權 실태 파악, 無緣墳墓 與否 확인, 豪華墓 與否 확인, 許可 與否 등 묘지실태 파악을 위해 墓地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하는 法案이 마련되고, 定期的으로 墓地實態把握을 위한 調査(census)를 하는 것이 墓地制度 발전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마. 墓地 再使用에 대한 意識

墓地 再使用은 時限附 墓地制度和 聯關이 있으나, 아직 時限附 墓地制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단 사람이 썼던 墓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拒否感을 誘發할 것이다. 그러나 墓地問題 解決次元에서 墓地 再使用에 대한 의식을 묻는 설문에 應答한 分布를 <表 3-31>에서 보면 44.6%가 贊成한다고 應答하여 時限附 墓地制度 導入의 가능성을 肯定的으로 뒷받침하는 結果로 해석된다.

<表 3-30> 無緣故墓 措置에 대한 意見

정비여부 및 조치사항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00	100.0	2,085	100.0	615
국가에서 정비해야한다	85.3	2,303	88.4	1,843	74.8	460
현재 그대로 둔다	14.7	397	11.6	242	25.2	155
정비의 경우 정비시기	100.0	2,303	100.0	1,843	100.0	460
빠를수록 좋다	35.7	823	34.6	638	40.2	185
단계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27.2	626	28.3	522	22.6	104
장기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23.1	532	22.7	419	24.6	113
일정기간후 하는것이 좋다	11.2	257	11.5	212	9.9	45
무응답	2.8	65	2.8	52	2.8	13
정비방법	100.0	2,303	100.0	1,843	100.0	460
없앤다	2.8	65	3.0	56	2.0	9
집단묘지로 모두이장	27.1	624	24.7	455	36.7	169
집단납골묘로 모두이장	24.5	565	25.6	471	20.4	94
집단납골당으로 모두이장	29.4	679	30.5	562	25.4	117
기타	4.7	108	4.8	89	4.1	19
무응답	11.4	262	11.4	210	11.3	5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31> 移葬(改葬)한 墓地 再使用에 대한 贊成與否

찬반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52	100.0	2,045	100.0	607
찬성한다	44.6	1,184	46.7	955	37.7	229
반대한다	55.4	1,468	53.3	1,090	62.3	378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심각한 墓地難을 겪고 있는 영국의 경우 “묘지 나눠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2층묘, 墓地再使用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한창이라고 한다(경향신문, '94.9.30.). 또한 이미 時限附 墓地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프랑스 등)에서는 墓地 再使用效果를 크게 얻고 있다. 이러한 제 외국의 사례를 勸

案하여 제도개선에 참고함은 물론 對國民 弘報·啓蒙에도 포함하여 意識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바. 個人墓 造成에 대한 態度

個人墓라 함은 公, 私設 公園墓地, 宗教團體 墓地, 共同墓地 등 集團化되어 있는 墓가 아닌 先山, 個人所有地에 分散 設置되어 있는 門中, 家族, 個人墓를 말한다.

人口密度는 높고 賦存資源이 不足하여 國土의 效率的 利用이 필요한 우리로서는 死者를 위한 空間이 生者의 空間과 競爭이 된다면 안될 것이다. 비록 생·사자간에 경쟁이 된다는 것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全體墓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個人墓는 개인적으로 보면 극히 적은 面積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크기의 面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墓地位置의 특성이 양지바르고 土質이 좋고 地勢가 緩慢하여 非山非野인 곳, 경사가 30도 미만의 위치로 道路에서 가깝고, 部落과 가까운 곳에 隣接, 土地의 可用性이 높은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앞으로 이로 인한 문제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묘는 자기 土地면 아무데라도 墓를 써도 좋다는 생각에서 대부분 許可없이 不法으로 造成되 있어 墓地行政의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門中, 家族, 또는 個人別로 墓를 쓰는 것에 대한 意見을 <表 3-32>에서 보면 贊成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22.5%이고, 反對할 필요가 없다고 찬성쪽에 가까운 응답을 한 50.7%를 포함한다면 73.2%로 個人墓의 占有率과 비슷한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地域別로는 郡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墓地問題에 대해 肯定的으로 認識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直接的으로 본인과 聯關이 있는 問題의 改善策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 問題點으로 묘지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3-32> 個人墓 造成에 대한 意見

의 건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86	100.0	2,073	100.0	613
찬성한다	22.5	605	20.3	421	30.0	184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26.8	719	28.4	589	21.2	130
반대할 필요는 없다	50.7	1,362	51.3	1,063	48.8	299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個人墓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短點이라고 보고 이를 나열하여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설문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分布를 <表 3-33>에서 보면 “國土開發에 障礙가 된다”에 42.0%가 肯定的으로 應答하는 등 전체적으로 半數 이하의 應答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應答率이 낮은 要因으로 본인의 個人墓를 쓰고 있다면 긍정적인 應答를 기피한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表 3-33> 個人墓의 短點에 대한 認知率

(단위 : %)

단 점 내 용	인지율 (N=2,658) ¹⁾
국토개발에 장애가 된다	42.0
토지활용에 장애가 된다	48.9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40.2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12.6
묘지공급부족을 초래한다	38.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個人墓를 쓰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可能的 墓地面積의 縮小나 다른 制度로의 變化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庭의 增加, 祖上墓 관리에 대한 意識의 變化가 올 것을 豫想해 볼 때 個人墓를 選好하는 집단의 意識은 크게 兩分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集團墓地 또는 納骨墓(堂)를 이용할 것이고, 다른 集團은 家族 個人墓

를 더욱 擴張하여 親戚間에 相互補完의인 墓地管理 體系로 變할 것이다.

따라서 急變하는 環境 및 意識 변화에 따라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墓地管理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사. 風水地理에 관한 信賴度 및 宗教의 影響

中國의 전국시대 말기에 發生하여 우리나라에는 統一新羅時代 以後에 傳來되어 墓地에 관한 傳統的인 慣習으로 緣由된 風水地理는

- 祖上의 墓를 잘 써서 祖上의 恩德을 받아 잘살아 보자는 생각
- 福을 받기 위하여 祖上의 靈魂을 慰勞하는 것이 孝의 延長이요, 子孫의 道理라고 하는 생각
- 靈魂이 肉體를 떠나더라도 언제나 肉體의 주위를 徘徊한다는 생각에 死體를 重視여기고 火葬을 꺼림
- 家門과 先山, 宗中山을 중시 여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며, 道敎의 이러한 풍수지리에 관해 변조된 결과지로 나온 것이라고도 한다(崔昌祚, 1984).

茶山 丁若鏞 선생은 “오늘날 風水에 眩惑되어 山の 空穴이 없으면 平地에 別格으로 穴을 지어 良田沃土가 幣하여 墓地가 되니 王土는 날로 줄어들고 墓地에 관한 訟事는 이제 幣俗이 되었다고 개탄”하셨다고 한다(다산 연구회, 1984). 또한 獨立協會도 이의 虛無함과 弊端을 獨立新聞에 力說하며 그 慣習의 閉止를 主張한 바 있다(愼鏞厦, 1973).

이같이 風水地理에 대해 無用과 閉止를 주장하여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墓地에 관한 한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實情으로 일부 왕능 주변에는 불법묘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學問으로까지 發展시키려는 努力이 到處에서 發見되고 있다고 한다(정규남, 1992).

風水地理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를 <表 3-34>에서 보면 안믿는 편이라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은 20.9%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믿는다고부터 전적으로 믿는다고까지 肯定的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4> 風水地理에 대한 信賴程度

신뢰정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10	100.0	2,096	100.0	614
많이 믿는편이다	41.1	1,114	39.6	831	46.2	283
보통으로 믿는편이다	37.9	1,029	38.4	803	36.7	226
안믿는편이다	20.9	560	22.0	462	17.1	10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葬法에는 埋葬뿐만 아니라 火葬, 水葬, 風葬, 雪葬, 鳥葬 등이 있는데 이러한 葬禮의 方法은 慣行性, 宗教性, 傳統性 외에도 그 나라의 地理的, 自然環境 등의 영향으로 정해져 온 것이다. 따라서 風水地理에 따라 祖上의 墓를 잘 써야 國家나 個人이 잘 산다는 것은 先進國의 葬墓文化를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는 社會指導層의 率先垂範인데 일부 指導層의 경우 현재의 本人의 위치가 風水地理에 따라 祖上의 墓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이들로부터 率先垂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묘제개선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應答者의 學歷別로 風水地理 信賴度를 <表 3-35>에서 보면 懸隔한 큰 차이는 없으나 안 믿는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에 있어서 中卒 이하와 大卒 이상 群간에 10.2%의 차이를 보였으며, 年齡 階層別로는 年齡이 많을수록 믿는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墓地를 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本人의 宗教 또는 風水地理와 같은 사상이라고 가정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風水地理를 믿는 율이 의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宗教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믿고 있는 종교가 葬禮方法 및 墓地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表 3-36>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1.2%는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28.7%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宗教別로는 기독교 39.8%, 불교 24.2%, 유교 25.8%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

단이나 종교가 없는 집단 모두의 의식 속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교적 의식과 풍수지리사상이 뿌리깊게 잠재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表 3-35> 學歷別 風水地理 信賴度

구 분	전 체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	N ¹⁾	%	N	%	N	%	N
계	100.0	2,698	100.0	1,088	100.0	1,088	100.0	522
많이 믿는편이다	41.1	1,110	44.5	484	40.7	443	35.1	183
보통으로 믿는 편이다	38.0	1,025	38.0	413	38.4	418	37.2	194
안믿는 편이다	20.9	563	17.5	191	20.9	227	27.7	14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36> 宗教가 葬禮方法 및 墓地選擇에 미치는 影響程度

영향정도	전 체		기독교		불 교		유 교		기 타	
	%	N ¹⁾	%	N	%	N	%	N	%	N
계	100.0	1,639	100.0	719	100.0	831	100.0	66	100.0	23
영향을 미친다	31.2	511	39.8	286	24.2	201	25.8	17	30.4	7
보통이다	40.1	658	33.0	237	46.0	382	51.5	34	21.7	5
미치지 않는다	28.7	470	27.2	196	29.8	248	22.7	15	47.8	1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종교가 없는집단) 제외.

아. 墓地 造成地域에 대한 態度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交通의 발달로 墓地의 造成이 住居地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擴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住居 空間內 또는 隣近에 墓地를 造成하여 嫌惡感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公園施設化하여 休息空間으로 活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外國과 같이 묘지면적을 縮小한 묘지, 또는 납골묘(당) 시설을 住居空間內에 公園化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意見을 <表 3-37>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집단은 30.6%로 아직 우리 國民의 墓地에 대한 인식은 嫌惡的인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3-37> 墓地造成地域을 住居地 隣近에 造成하는 것에 대한 意見

의견	전체		시부		군부	
	%	N ¹⁾	%	N	%	N
계	100.0	2,713	100.0	2,094	100.0	619
매우 바람직하다	8.7	236	9.2	191	7.2	45
바람직하다	21.9	595	21.9	459	22.0	136
보통이다	28.0	760	27.2	569	30.9	191
반대한다	32.2	873	32.2	674	32.1	199
적극 반대한다	9.2	249	9.6	201	7.8	48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자. 墓地 基地(使用)權에 대한 態度

集團 墓地가 아닌 個人墓로서 자기의 所有가 아닌 남의 土地에 主人의 許可없이 墓地를 造成한 경우라 할지라도 墓地로서 20년이 지나면 土地 所有主 意思대로 하지 못하도록 法的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墳墓基地權은 不法墓의 발생을 助長하거나 지역 재개발로 인한 보상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墓地基地權 및 保護請求權을 閉止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을 <表 3-38>에서 보면 56.9%가 閉止를 贊成하고 있으며, 市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表 3-38> 墳墓基地權 및 保護請求權 廢止에 대한 贊成與否

찬반 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35	100.0	2,032	100.0	603
찬성한다	56.9	1,500	58.8	1,195	50.6	305
반대한다	43.1	1,135	41.2	837	49.4	298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차. 墓地 豫約制에 대한 態度

私設公園墓地, 個人墓地的 경우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公設公園墓地的 경우 일정 기간 該當地域에 거주한 자로 死亡한 경우에만 埋葬을 許可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重病에 있는 경우 언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喪을 당할 경우 墓地問題로 적지 않은 심적 負擔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公設 公園墓地도 조건을 전제로 한 墓地豫約制를 실시한다면 집단묘 사용률을 提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墓地 豫約制 導入에 대한 贊反與否를 보면 61.6%가 찬성(表 3-39 참조)한다고 답하여, 이의 시행 가능성을 示唆하고 있으며, 公設墓地 뿐만 아니라 納骨墓, 納骨堂 등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약할 수 있는 나이 制限을 묻는 설문에 답한 나이의 平均은 59.3세로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重病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사의 診斷書를 添附하는 등을 예약조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3-39> 墓地 豫約制에 대한 贊成與否

찬성 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81	100.0	2,067	100.0	614
찬성한다	61.6	1,653	62.2	1,287	59.6	366
반대한다	38.4	1,028	37.8	780	40.4	248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카. 子孫에 대한 墓地管理 期待

우리나라의 傳統文化 중 西歐文化의 氾濫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葬墓文化일 것이다. 그러나 人口增加 抑制 次元의 家族計劃事業 실시는 小子女 갖기를 원하는 家庭의 增加로 男兒 子孫이 없는 家庭이 많아졌고, 父母에 대한 扶養率 減少(공세권 외, 1993)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祖上의 墓地管理를 자손에게 기대할 수 없는 要因으로도 解析 되는데, 祖上의 墓 위치에 대한 認知度を 보면 3代祖의 묘를 알고있는 경우는 48.8%이고, 4代祖는 28.0%만이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나(윤양수, 1987)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後孫들이 祖上들의 墓를 잘 管理해 줄 것으로 기대하느냐?의 설문 결과를 <表 3-40>에서 보면 “期待한다”고 응답한 群은 19.4%, 다소 변할지라도 관리는 해줄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群이 37.9%로 반수 정도는 子孫들에게 관리를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表 3-40> 祖上墓 管理의 子孫에 대한 期待

특 성	전 체		가구주		배우자		기 타	
	%	N ¹⁾	%	N	%	N	%	N
계	100.0	2,697	100.0	1,639	100.0	1,025	100.0	33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19.4	523	20.6	338	17.6	180	16.3	5
다소 변할지라도 문제는 없을것이다	37.9	1,024	37.9	621	37.2	382	63.4	21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8	560	20.7	339	21.4	219	4.8	2
전통적인 관례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21.9	590	20.8	341	23.8	244	15.5	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子孫들에게 期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를 包含하여 傳統的인 慣例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否定的인 意識을 가진 群은 42.7%인데 이는 時間이 경과할수록 더 높아질 可能性이 높다. 그 理由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庭의 增加, 葬墓文化에 대한 意識變化는 祖上의 墓地 管理를 期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子孫들 自身들도 傳統的인 墓制慣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事例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豫想은 새로운 墓地制度의 수립을 要求하게 될 것이지만 一部 階層에서는 오히려 傳統的인 慣行을 高집할 것도 排除할 수 없다.

다. 豪華墓에 대한 意識

英國의 처칠 수상은 묘는 本人의 遺言에 따라 옥스포드 근교의 敎會墓 地에 2坪이 채 못되는 규모에 있어(강원도, 1993),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豪華墓는 山林毀損은 물론 自然景觀을 해치고 특히 國民 階層間 違和感을 造成하고, 非生産的인 國土利用과 經濟的 損失 要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豪華墓에 대해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에 대한 意見을 <表 3-41>에서 보면 子孫으로서 當然하다고 應答한 集團은 5.5%로 일부계층에서 豪華墓를 쓰고 있는 비율과 비슷한 分布를 보였고, 法으로 못하도록 規制해야 한다고 強制的인 의사를 표한 집단은 34.7%로 나타났다. 여하간 生者의 호화로운 생활은 民主주의 國家에서 規制할 수 없으나 死者를 위한 豪華墓는 個人的 財產權 보호차원을 떠나 國益次元에서 規制되어야 할 것이다.

파. 共同墓地 措置에 관한 態度

해방 이후 無分別하게 늘어난 것이 共同墓地이다. 대부분의 마을 인근 야산에는 共同墓지가 있다. 이러한 共同墓지에 있는 墓는 無緣故墓이거나 管理가 안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共同墓地는 지역개발

및 土地利用에 非效率의 일 뿐만 아니라 墓地에 대해 嫌惡감을 加重시킴으로 墓制改善에 있어 障礙要因으로 指摘된다.

따라서 共同墓地에 대한 措置意見을 보면 <表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緣故者가 없는 無緣故墓만 移葬을 하고 緣故者가 있는 墓는 緣故者로 하여금 옮기도록 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고 일정한 장소로 모두 集團移葬토록 한다가 26.6%로 나타났다.

<表 3-41> 豪華墓에 대한 意見

문제내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707	100.0	2,091	100.0	616
자손으로 당연하다	5.5	149	3.3	68	13.2	81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37.7	1,021	38.0	794	36.9	227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22.0	597	22.5	470	20.6	127
법으로 못하도록 해야한다	34.7	940	36.3	759	29.4	18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42> 共同墓地 措置에 대한 意見

문 제 내 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79	100.0	2,071	100.0	608
일정한 장소로 모두 이장한다	26.6	714	24.9	515	32.7	199
모두 유골을 정리하여 납골묘(당)에 옮긴다	15.2	408	16.5	342	10.8	66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당)에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11.1	296	10.4	215	13.3	81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당)로 옮기고 나머지는 연고자에게 옮기도록한다	36.4	976	38.8	802	28.5	173
현행 그대로 둔다	9.2	248	14.0	85	7.9	163
기 타	1.4	37	1.6	34	0.6	4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하. 弘報·啓蒙教育 方法에 관한 意見

傳統的인 葬墓慣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問題의 意識은 높지만 實踐에 있어 실천율이 낮을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實踐率을 높일 수 있는 意識變化를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效果的인 意識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啓蒙方法에 관해 설문한 結果를 <表 3-43>에서 보면 放送媒體를 통한 방법이 55.8%로 가장 많고 學校教育을 통해서 하는 것이 26.2%로 次順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한 弘報·啓蒙과 더불어 社會 指導層에서 率先 垂範을 한다면 그 效果는 배가 될 것이다.

<表 3-43> 墓地慣行 改善을 위한 弘報·啓蒙 方法

계몽방법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33	100.0	2,032	100.0	601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55.8	1,469	55.4	1,126	57.1	343
신문을 통한 홍보	7.0	184	6.9	140	7.3	44
관련법의 벌칙강화	10.3	271	10.4	211	9.9	60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26.2	689	26.6	541	24.7	148
기타	0.8	18	0.7	14	1.0	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第 3 節 葬墓 行態

1. 本人의 墓地

應答者 자신과 부모를 포함하여 祖上에 대한 葬墓 行態를 통해 意識과 함께 改善策을 摸索하고자 설문하였다. 應答者 또는 配偶者가 앞으로 사용할 墓地를 確保했는지의 여부를 <表 3-44>에서 보면 전체 19.4%(대부분 연령계층이 40대 이후임)가 本人(配偶者)의 墓地를 確保해 놓았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이 준비해둔 墓地類型은 個人墓地在 대부분(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4> 本人(配偶者)의 墓地 確保與否

확보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80	100.0	2,068	100.0	612
확보해 놓았다	19.4	521	17.3	359	26.4	162
확보하지 못하였다	80.6	2,169	82.7	1,709	73.6	45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또한 子孫들에게 바라는 墓地類型을 <表 3-45>에서 보면 역시 個人墓가 48.1%(기 확보한 집단 포함)로 가장 높고, 郡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현재의 개인묘 점유율(70%)보다 낮아 앞으로 자연적인 묘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表 3-45> 子孫들에게 바라는 墓地

묘지구분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2,675	100.0	2,064	100.0	611
집단묘지	25.8	689	27.6	569	19.7	120
개인묘지	48.1	1,286	42.4	876	67.1	410
화 장	24.6	660	28.3	584	12.4	76
기 타	1.5	40	1.7	35	0.8	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本人의 葬禮方法에 대해 遺言을 하겠느냐?의 질문에 대한 應答分布를 <表 3-46>에서 보면 遺言하겠다가 38.3%(1,026명)이었고, 그 중 遺言內容을 응답한 746명의 유언내용은 葬禮方法이 57.9%(432명), 묘자리에 대한 遺言이 30.3%(226명)이었다.

表 3-46. 本人의 葬禮方法에 대한 遺言與否

유언여부	전 체		가구주		배우자		기 타	
	%	N ¹⁾	%	N	%	N	%	N
계	100.0	2,680	100.0	1,636	100.0	1,013	100.0	31
유언하겠다	38.3	1,026	39.7	649	35.8	363	44.8	14
하지 않겠다	61.7	1,654	60.3	987	64.2	650	55.2	17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2. 祖上의 墓 조성에 대한 行態

應答者의 父母 中 한 분이라도 돌아가셔서 墓를 쓰게 된 行態를 보았다. 먼저 現在의 위치에 墓를 쓰게 된 理由를 <表 3-47>에서 보면 先山이라서 현재의 위치에 모셨다고 응답한 群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남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가 10.7%로 個人墓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7> 父母님의 墓地를 現在의 位置에 쓴 理由

이 유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1,770	100.0	1,270	100.0	500
선산이라서	63.1	1,116	61.3	779	67.5	337
공설공원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11.1	197	12.6	160	7.3	37
사설공원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9.0	159	10.5	133	5.2	26
종교단체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4.2	75	5.2	66	1.7	9
남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	10.7	189	8.8	112	15.4	77
기 타	1.9	34	1.6	20	2.9	14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묘자리 選定에 있어 明堂與否를 가려 좋은 곳으로 택하였느냐?의 應答 分布를 <表 3-48>에서 보면 그렇다고 應答한 集團이 80.6%로 風水地理 信賴도와 비슷한 分布를 보였으며, 좋은 곳을 누가 택하였느냐?에 대해서는 家族이 議論해서 정하였다가 37.5%,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地官)이 정하였다가 37.0%로서 次順이었으며, 郡部에서 지관에 의한 選擇이 높게 나타났다.

<表 3-48> 父母님의 墓자리 明堂 選擇與否 및 選定한 者

선택여부 및 선택자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1,763	100.0	1,268	100.0	495
명당으로 선정하였다	80.6	1,421	80.2	1,017	81.6	404
집안식구들의 의논	(37.5)		(39.1)		(33.9)	
집안 친척	(18.1)		(20.7)		(11.4)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	(37.0)		(32.8)		(47.5)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	(1.6)		(1.8)		(1.2)	
기타	(2.0)		(1.9)		(2.2)	
무응답	(3.7)		(3.6)		(3.7)	
그렇지 않다	19.4	342	19.8	251	18.4	9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또한 宗教有無別로 明堂 選擇與否를 <表 3-49>에서 보면 儒敎가 91.5%로 가장 높고, 佛敎 87.8%, 基督教 74.0%이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77.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볼 때 傳統的인 儒敎思想과 風水地理 思想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 가운데도 뿌리깊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墓가 허가난 墓인가?의 설문에 許可난 墓라고 확실히 응답한 집단은 46.9%이고, 지역간에는 2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집단묘와 개인묘의 차이로 郡部の 대부분이 개인묘로 불법묘임을, 또한 郡部の 경우 거주지역에 토지 또는 연고가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郡部에서의 墓地購入이 어렵지 않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된다(表 3-50 참조).

<表 3-49> 宗教別 明堂 選擇與否

영향정도	전 체		기독교		불 교		유 교		기 타		없 다	
	%	N ¹⁾	%	N	%	N	%	N	%	N	%	N
계	100.0	1,754	100.0	442	100.0	593	100.0	58	100.0	16	100.0	646
선 택	80.5	1,412	74.0	327	87.8	520	91.5	53	68.6	11	77.5	501
비선택	19.5	342	26.0	115	12.2	73	8.5	5	31.4	5	22.5	14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表 3-50> 父母님의 墓地 許可與否

허가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1,779	100.0	1,279	100.0	500
허가난 묘지	46.9	834	55.2	705	25.6	128
허가나지 않은 묘지	23.4	417	18.0	230	37.4	187
모르겠다	29.7	529	26.9	344	37.0	18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現在의 묘자리에 대한 만족 정도를 <表 3-51>에서 보면 52.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161명의 不滿足 理由로는 거리가 멀어서 31.7%, 남의 산이라서 25.5%, 明堂이 아니라서 16.1%로 나타났다으며, 옮기고 싶다고 應答한 147명의 옮기고 싶은 곳은 個人墓가 35.6%로 가장 많았다.

<表 3-51> 父母님의 墓地에 대한 滿足度

만 족 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계	100.0	1,777	100.0	1,274	100.0	503
만 족 한 다	52.7	936	53.8	685	49.9	251
보 통 이 다	38.3	680	36.9	470	41.7	210
불만족 하다	9.1	161	9.3	119	8.4	42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돌아가신 父母의 墓를 쓴 행태를 종합해 볼 때 現在 導出되어 있는 問題點인 個人墓 選好, 風水地理에 의한 墓地選擇, 不法墓 등이 사실대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3. 改葬(移葬) 實態

祖上의 墓를 어떤 사유에서이든지 移葬(개장)한 經驗이 있는 집단은 26.3%였고(表 3-52 참조), 移葬한 이유로는 家族(先山)墓地로 옮기고 싶어서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個人所有의 土地, 先山이 없는 家口의 경우 조그마한 面積일지라도 자가소유의 山을 購入하여 本人의 묘 자리를 준비함은 물론 祖上을 한곳에 모시고자 하는 意識에 따른 結果로도 해석되며, 이는 移葬하여 옮긴 장소를 묻는 설문에 답한 686명의 이장한 場所는 個人(家族, 先山)墓가 72.5%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火葬을 하였다가 12.5%로 나타났다.

<表 3-52> 祖上墓의 移葬 經驗有無 및 移葬한 理由

내 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¹⁾	%	N	%	N
이장경험유무						
계	100.0	2,682	100.0	2,069	100.0	613
있 다	26.3	705	26.4	546	25.9	159
없 다	73.7	1,977	73.6	1,523	74.1	454
이장이유						
계	100.0	686	100.0	529	100.0	157
지역개발사업 때문	20.2	138	21.0	111	17.3	27
묘지사용권 때문	3.4	24	3.7	20	2.3	4
관리상의 이유로	10.7	74	11.3	60	8.7	14
명당이 아니라서	12.9	88	10.8	57	20.1	31
합장하려고	16.9	116	16.3	86	19.0	30
가족(선산)묘지로 옮기려고	28.2	194	29.4	156	24.0	38
거주지 가까운 곳에 모시려고	6.8	46	6.8	36	6.6	10
기타	0.9	6	0.6	3	2.1	3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第 4 章 國內·外 墓制에 대한 考察 및 比較

第 1 節 우리나라의 墓地制度

1. 歷史的 考察

우리나라 墓地의 歷史에 대해서는 많은 先行研究에서 詳細하게 發表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簡略하게 이 報告書의 이해를 돕는 水準에서 略述하였다.

가. 三國時代

三國時代 以前 墓制의 특징은 支石墓 또는 고인들의 墳墓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어 土葬風習과 共同墓地體制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屍體를 일정기간 假埋葬하였다가 遺骨을 다시 埋葬처리하는 二重葬制의 특수한 풍속이 있었다.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거대한 封墳의 구축과 內部에 많은 副葬品을 所藏하는 등 화려함이 특징이며 百濟에서는 1墳 多葬의 家族墓 성격을 지닌 벽관묘와 火葬墓가 존재하였는데 현존하는 古墳은 왕족등 특수계층의 것으로서 一般市民은 封墳이 없는 原始形態의 埋葬을 답습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나. 統一新羅時代

統一新羅時代로 접어들면서 古墳들은 古新羅時代의 共同墓地로부터 흩어져 郊外로 分散하기 시작하였으며 묘지선정에 陰陽五行十二支思想(풍수지리)이 導入되고 묘지에는 碑閣, 石人, 石獸로 장식하는 예가 시작되고 특히 佛敎의 影響으로 火葬法이 유행되었는데 화장 후에는 散骨 또는 埋

骨處理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다. 高麗時代

墳墓의 형태는 石室墓, 石槨墓, 土壙墓로 신분에 따라 다르며 火葬後 合골, 佛寺에 安置하였다가 埋骨(骨葬制)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火葬, 埋葬 풍습이 混在하였고 品階에 따라 墳墓의 크기 등을 制限하는 禁限步數制가 있었다(보건사회부, 1991).

라. 朝鮮時代

朝鮮朝는 國策인 崇儒抑佛政策으로 화장을 금하고 埋葬制를 강력 시행 하였으며 새로운 禁限步數制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儒敎의 葬制, 風水 地理思想의 盛行으로 族葬制(先山)가 생기면서 禁限步數制가 무너지고 明堂차지를 위한 山訟, 先山마련을 위한 林野의 私有化, 墓地增加 擴散등 폐해가 발생하는 한편 중래의 火葬風習은 거의 衰退하기에 이르렀다

마. 日帝時代

日帝는 朝鮮朝의 族墳制에 따른 墳墓의 散在와 非效率의 山地利用 및 좋지못한 慣習과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集團墓地政策에 의한 共同墓地制 등을 실시(1912년)하였으나 共同墓地나 火葬場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下流階層 또는 無緣故者 등이었고 中流層 이상은 대부분 私有林을 확보하고 家族墓地를 設置하여 계속 墳墓를 造成하여 왔다(윤양수 외, 1987).

바. 1945年 以後

해방 후에도 墓制에 대하여는 거의 慣習에 맡기고 방치하여 오다가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을 制定(1961.12.5.), 묘지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였으나 개인, 가족, 宗中墓地 등 墓地의 分散設置가 許容되고 제도시행

상 제반여건이 不備되어 埋葬爲主의 慣行이 계속됨으로 인해 法規가 무시된 채 도처에 無許可墓地가 난립되는 한편 합법적인 墓地는 설치가 곤란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 墓地不足 現像이 점차 深化되기 시작하였다. 葬事지내는 방법으로는 埋葬과 火葬 두가지 형식이 通用되고 있는데 그중 埋葬이 우리의 전통 형식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은 朝鮮時代以前에는 오히려 火葬風習이 盛行하였을 뿐만 아니라 火葬, 風葬, 草葬 등으로 일정기간 屍體를 보존한 후 脫肉된 연후에 뼈를 收拾하여 葬事하는 納骨形式의 二重葬制가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왔었다(보건사회부, 1991).

第 2 節 最近의 墓地制度

우리나라 國民의 墓制에 관한 意識은 宗教, 風水地理, 傳統的 慣習 등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어서 埋葬 및 個人墓를 選好하는 것이 현재 묘지관리의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묘지관리를 위해 制定한 法律을 포함한 制度 自體에도 問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問題가 되는 法規內容을 중심으로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961년에 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改正하였고, 그 목적을 “埋葬, 火葬 및 開葬과 墓地, 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上の 危害를 방지하고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效率的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理由는 전 國토의 墓地 占有率이 1%이고, 全體墓의 70%를 차지하는 個人墓가 대부분 土地의 可塑性이 높은 지역에 있는 점 등이다. 또한 保健衛生上の 문제 뿐만 아니라 公衆 및 環境衛生上の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公共福利 增進에 기여함은 墓地難과, 豪華墓, 不法墓로 國民間 違和感을 조성하고 있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묘지법률 제1조).

- 나. 墓地面積의 基準을 墳墓 1기당 集團墓의 경우 30㎡(9평), 자연인의 個人墓는 80㎡(24평)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與件으로서나 外國에 比較해 볼 때 越等히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다(법률 제4조).
- 다. 埋葬,火葬을 하고자 하는 자는 埋葬地,火葬地 管轄 機關長에게 申告를 하고, 保健社會部 長官,道知事는 墳墓 一齊申告를 하게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程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묘지관리에 대한 精確한 行政統計 資料가 未洽하여 政策樹立이 어려운 實情이다(법률 제5조).
- 라. 墓地難에 대처하기 위해 公設墓地, 公設火葬場, 公設納骨堂 設置를 市長, 郡守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이 老朽 또는 落後되어 있어서 利用率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狀況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實情이다. 따라서 設置條項을 義務條項으로 하고 國庫에서 일정비율의 豫算을 지원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법률 제7조).
- 마. 私設墓地, 私設火葬場, 私設納骨墓(堂)의 설치는 許可事項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設置 規制를 緩和하여 시설을 늘리고 施設의 現代化로 國民의 意識을 變化시켜 利用率을 提高한다(법률 제8조).
- 바. 無緣墳墓는 一齊申告 기간내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緣故者가 없는 墳墓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無緣墳墓의 遺骨을 納骨堂에 安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開發(도시계획, 도로건설 등) 次元에서 이장이 부득이한 地域에 한하여 移葬을 하였을 뿐, 墓地管理 次元에서의 일제신고 및 無緣墳墓 整備는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법률 제 15조의 2).
- 사. 罰則條項으로 不法埋葬, 基準超過 墓地設置는 1년이하 懲役 또는 200만원 이하의 罰金을, 申告 불이행자는 3월이하의 懲役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賦課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대

로 이행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實情이다. 이는 본 규정이 微弱한 이유도 있지만 장례에 관한 慣行的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違法일지라도 묵인 되는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벌칙 規程을 現實에 맞게 強化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弘報를 통해 알려져 慣行的으로 葬禮를 치를 것이 아니라 規程에 따라 치루도록 하는 行動의 變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법률 제18조).

이외에도 작고 많은 問題點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墓地管理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規程(시한부 묘지제, 화장 의무대상자, 분묘 기지권, 묘지실태 조사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必要性을 안고 있다.

第 3 節 外國의 墓地制度

1. 日本

日本은 墓地行政體系가 확립되어 있고 國民 스스로가 許可된 區域 以外에서는 墓地를 설치하는 일이 없으며 宗教에 의한 國民自律意識의 發展과 철저한 法的規制 그리고 強力한 行政指導로 火葬 위주의 慣行을 갖고 있다. 日本의 火葬率は 97%이며 火葬慣行은 우리나라처럼 화장후 散骨이 아닌 納骨制가 주된 관습으로 되어 있다. 納骨方法으로는 納骨墓와 納骨堂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납골묘지의 크기는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5\sim 10\text{m}^2$ (1.5평 $\sim$ 3평)정도에 불과하다. 日本의 墓地는 集團化되어 운영주체는 地方公共團體를 위주로하고 공익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로 宗教法人, 寺院에서 사설묘지를 운영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1). 火葬률이 높고 納骨墓地(가족납골묘)로 작은 면적을 사용하고, 納骨堂 利用率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도시지역의 墓地不足이 社會問題가 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家族納骨墓地 대신 가로, 세로 각각 90cm 크기의

비석만을 세운 壁型墓地나 영국의 스캐터링 그라운드(scattering ground)를 모방하여 遺骨을 땅에 뿌릴 수 있도록 한 新集合 平面墓地 등을 導入하고 있다(이성한, 1994).

2. 臺灣

대만은 우리나라의 墓地慣行과 類似하여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政府는 墓地問題의 改善對策으로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건설 6개년 計劃 가운데 墓地問題를 포함시켜 무질서한 墓地和 公共墓地的 정리 및 공원화와 公設墓地 설치 그리고 納骨堂을 건립키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로 造成되는 共同墓地는 평장방식을 택해 封墳을 없애고 埋葬한지 7년이 지난 뒤에는 遺骨을 수습하여 納骨堂에 안치해 墓地的 循環使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성한, 1994).

墓地的 時限附使用制를 導入 8~1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며, 墓地面積을 16m²에서 8m²로 축소하고 殯儀館을 증설하여 국민에게 葬禮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며, 현대식 火葬場을 증설하는 등 墓地問題解決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葬禮經營者로 하여금 장례의 운영을 전담케하여 不法墓地的 擴散과 無緣墳墓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윤양수 외, 1987). 대만의 火葬率은 18% 정도이며 基當墓地面積은 평균 16m²이하이다.

3. 香港(香港)

香港은 地理的 특성과 人口의 過密로 墓지로 活用할 토지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共私設의 墓地에는 墳墓가 밀집되어 있고 공동묘지는 墓 1基當 面積이 3.6m²(1.1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火葬率은 72%로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 公設墓地內的 墳墓는 6년 基準으로 時限附 埋葬制度를 운영하고 있으며 火葬遺骨은 納骨하여 安置하고 私設納骨堂에서는 50년 期限으로 納骨하는 制度가 있다(보건사회부, 1991).

4. 中國

中國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葬禮制度和 墓地選擇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中國人들은 祖上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능한 훌륭한 무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좋은 墓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風水地理說에 따라 경관이 좋은 구릉지역이나 大都市의 주변에 크고 화려한 家族墓地를 설치하였다. 반면에 가난한 농부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平野地帶나 마을 주변의 耕作할 수 없는 작은 언덕에 그들의 祖上을 埋葬함으로써 과거 世代의 무덤을 표시하는 수많은 원뿔형 흙무덤이 모든 農耕地域에 散在하고 있어 國土의 效率的인 활용에 障礙요인이 되고 있다.

中國政府는 1949年 자유화 이래 무덤을 위해 耕作土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왔다.

① 火葬을 촉진하며, 무덤조성에 경작지 사용을 禁止하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市와 縣에 火葬場을 설치토록 하였다. ②耕作地에 散在하고 있는 기존의 무덤을 公共墓地로 이전하기 위해 마을 근처의 非耕作地를 개방한다. ③농부들이 死亡者를 들에 埋葬하고자 하는 경우 땅속 깊이 埋葬을 허락하고 그위에 경작을 하도록 한다. ④모든 葬禮活動은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며 미신적인 활동을 제거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들에 있는 흙무덤을 없애고 그대신 公共墓地를 확대하였다.

墓地的 팽창을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中國政府는 1988년에 葬禮管理에 관한 規制를, 그리고 1990년에 무덤造成을 위한 土地濫用의 금지에 관한 告示를 발표했다(Wu chuan-jun, 1994).

5. 歐美各國

프랑스 : 19세기 초부터 墓地를 集團化하여 自治區마다 公設墓地를 운영하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自治區 墓地內에 埋葬하고 있다. 墓地的 再使用을 위하여 5~30年 단위로 再契約이 가능한 時限附 墓地制度를 도입하

고 있으며 시한이 경과하면 遺骨을 集團納骨하여 安置하고 있다. 일부 墓地에는 墳墓의 내부공간을 층계식으로 造成하여 複數의 屍體를 보존하는 家族墓地로 사용하며 가톨릭문화의 영향으로 火葬率은 8%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英國 : 중세 이후 敎會墓지가 發達하였으나 19세기부터 都市內 敎會墓地에는 埋葬을 금지하고 설계에 의한 集團公園墓地를 설치하여 運營하게 되었으며 묘역내에는 묘비 등 조형물이 장식되어 있고 火葬率은 60%수준이다. 최근에 묘지난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묘지 나눠쓰기”운동 전개에 따른 찬반 토론이 한창이다.

獨逸 : 敎會共同墓지가 公營墓지로 바뀌어 墓지가 집단화되고 葬法은 매장형식이나 時限附 墓制를 도입하여 시한이 지난 屍身은 겹쳐서 葬事를 지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屍身을 세워서 埋葬하고 있으며 80년전에 비해 墓地面積이 10분의 1로 감소되었다.

이탈리아 : 10년 時限附 埋葬후 30년 단위로 2차 사용계약을 할 수 있으며, 묘지아파트 안치기간이 만료되면 粉末로 처리하여 廢棄시킨다.

美國 : 墳墓設置形態가 봉분이 없는 平葬 爲主이며 石物은 머리돌 크기의 墓碑만으로 낮은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50년대 말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연방법률을 개정, 墓碑를 세울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판등에 이름을 새겨서 땅높이로 얹혀 놓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公園墓地의 만장에 따라 墓地面積 縮小 및 火葬을 권장하고 있으며 火葬率은 12% 수준이다.

스위스 : 遺家族 등이 埋葬이나 火葬을 선택한 후 共同墓地 遺骨安置所에 20년 保存 후 主人이 없으면 廢棄한다. 이 나라의 火葬率은 비교적 높아 67% 水準에 이르고 있다(보건사회부, 1991, 1994).

第 4 節 外國 墓制와의 主要 制度 比較

우리나라의 主要 墓地制度和 外國의 制度와의 比較를 <表 4-1>에서 보면 制度改善의 時期와 必要性이 切迫함을 볼 수 있다

<表 4-1> 外國 墓地制度와의 比較

국명	분묘1기당 면적(기준)	화장률	시한부묘지제	묘지조성 유형	장법과 분묘형태
한 국	집단묘지 9평 (30m ²) 개인묘지 24평(80m ²)	19%	미시행	공설, 사설묘 중중, 가족, 개인 묘지	매장, 봉분 (평분)형
중 국	-	-	경지,매장금지지역 내의 묘지 시한부 개장 또는 평분화	지역별 공동묘지	토장,봉분형
일 본	4m ²	97%	도입 검토중	공설, 법인 (종교)묘지	납골당(묘) 집단화
대 만	16m ²	18%	공동묘지사용시 시한 명시 시한(8~12년) 경과 후 납골	공립, 사립 공동묘지 개인묘지	토장,평분형 일부 납골
홍 콩	3m ²	72%	공설묘지는 6년 시한경과 후 납골	공립, 종교 (단체)묘지	매장,평분형 납골당(50년 시한)
네덜란드	3m ²	98%		공설묘지	납골묘, 평분형
영 국	3.6m ²	69%	5,10,15,30년, 준영구	공설묘지	평분형 납골묘(1기당 6구안치)
프랑스	2.5 ²	8%	10,30,50년 시한후 지하유골 보관소에 안치 5~6년시한은 무상	공설묘지 사유지내 매장 묘지아파트 가족묘지	지하집단 안치소 지하납골묘
미 국	2.9m ²	12%	-	전원,잔디묘지 묘지아파트(1.5 평내 50구 이상 안치)	평분형위주

<表 4-1> 계 속

국명	묘지설치규제	정 책 방 향	기타
한 국	지방자치 단체장 허가	단위 면적 축소 화장 권장 묘지 집단화 시한부 묘지제도입 무연분묘 정비	
중 국	지방정부허가	화장제 적극 권장 화장, 납골시설 확충	공무원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장례지원 없음
일 본	시, 정, 촌장 허가	묘지공원화 벽묘지보급 무연묘정비	
대 만	시, 도 주관, 허가	묘지공원화로 면적축소(6~9m ²) 시한부묘지제도입(8~12년) 화장, 납골제 확대	
홍 콩	지방의회 승인	화장 권장 벽감식 납골	95% 이상이 불교인으로 주로 화장에 의존
네덜란드	정부, 지방자치 단체 허가	화장권장	개인, 사설묘지 허가하지 않음
영 국	정부, 지방자치 단체 허가	화장권장	묘지 나눠쓰기 시민운동 전개 묘지제사용
프랑스	자치구 조례허가	묘지아파트, 가족묘지 개발 확대보급 시한부묘 확대	화장률이 매년 증가추세이 고 묘지를 아파트식으로 집단화하고 있음. 시한부 묘지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으며 실효를 얻고 있다.
미 국	-	연방정부법으로 묘비를 세울수 없도록 함. 화장 권장, 묘지면적 축소	

第 5 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는 祖上을 崇拜하고 孝를 근본으로 하는 儒敎的인 風習이 傳統 文化의 脈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葬墓文化에 있어서도 뿌리깊게 작용하여 埋葬을 위주로 한 葬墓慣行이 土着化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葬墓文化는 國土의 묘지화 面積이 1%를 차지하게 되었고, 앞으로 2~10年 以內에 집단묘지의 供給이 限界에 이르러 墓地難을 겪어야 하는 問題에 逢着하게 되었다. 또한 土地의 利用價値가 높은 地域이 墓地化 되어 國土 利用의 經濟的 가치면에서도 對策이 세워져야 할 時點에 와 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個人墓地 設置와 墓地管理의 行政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適法하게 設置, 管理되지 못하고 전통적인 慣習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墓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번 설치된 墳墓는 영구히 土着化되고, 일부 富裕層은 자신의 신분과 시욕 등으로 豪華墳墓를 造成하고 있어 國民的 違和感을 자아내는 등 墓地問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急變하는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3년에 묘지제도 법률 개정안이 立法豫告된 바 있다. 그러나, 墓地制度는 國民의 傳統的인 文化, 情緒, 宗教, 慣習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得보다 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 할 수 있는 法律案 마련에 國民의 集約된 意見을 收斂하여 提示하기 위해 本 研究는 施行된 것이다.

本 研究를 위한 調査는 제주도와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99개 標本調査區에서 2,970개의 家口를 抽出하고 각 家口內의 家口主 또는 配偶者를 대상으로 2,734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第 1 節 要約

1. 應答者の 一般特性

應答者の 年齢은 30代群이 32.3%로 제일 많았고 40代가 25.8%, 50代가 18.1%의 순이고 郡部의 年齢層이 높은 分布를 보였다. 應答者 또는 應答者の 가구주가 長孫인 가구는 39.3%, 父母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26.4%로 郡部에서 부모를 많이 모시고 있다.

應答者の 31.1%가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基督教가 26.9%, 儒敎는 2.7%에 불과했다. 學歷은 中卒 이하가 제일 많아 40.4%로 郡部에서 많았다. 職業은 事務職이 22.2%로 제일 많았다.

2. 墓地問題에 대한 意識

가. 應答者の 절대다수인 70.7%가 墓地面積 증가에 대해 問題가 深刻하니 國家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墓地問題를 심각하게 意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意識은 市部에서 높아 74.2%로 都市地域에서의 墓地購入이 어렵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나. 喪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經驗者 중 48.2%가 墓地購入難이었고 35.2%는 墓地價格이 너무 비싸다고 應答하고 있어 墓地確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墓制 關聯 法規에 관한 認知度

가. 墓地管理를 위한 法律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比率은 37.9%에 불과했으며 이는 市部에서 다소 높아 38.7%였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認知度를 보면 墓地의 面積, 場所, 申告등에 관하여 法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應答한 比率은 38.0%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法的인 制裁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比率은

24.1%에 불과했다. 또한 移葬, 埋葬을 하려고 할 때 申告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1.0%가 認知하고 있었다.

- 나. 不法墓의 措置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38.7%가 罰金을 물리지 않고 許可난 곳으로 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意見을 제시했고, 24.8%는 이미 設置된 墓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 다. 墓地에 관한 法律的인 規制事項을 強化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否定的인 의견을 답한 비율이 25.8%로 우리의 묘지제도가 法律을 根據로 이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傳統적인 慣行에 의한 것임을 示唆하는 結果이다.

4. 墓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見

가. 墓地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넓게 占有하고 있는 面積을 줄이는 것이다. 應答者들의 墓地面積 축소에 대한 찬성여부는 46.1%가 贊成했고 52.4%는 현행 그대로가 좋다는 意見을 제시하고 있어 墓地面積 縮小에 어려움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 나. 墓地面積을 축소할 경우 墳墓 1基當 適正面積 규모로 3~10m'(1~3평)를 76.7%가 답하였고, 13~20m'(4~6평)는 22.0%였다.

또한 豪華墓의 面積基準을 33~99m'(10~30평)미만으로 認識하고 있는 應答者가 74.0%에 이르고 있어 일정 基準面積 이상을 豪華墓로 보는 것이 아니라 不必要하게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을 豪華墓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墓地制度 改善에 대한 意見

- 가. 火葬에 대한 贊成與否를 보면 過半數 程度인 50.1%가 贊成하고 있었으며 이는 市部에서 높아 55.8%였다. 현재의 火葬率 19.1%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나 실제 火葬에 있어서는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意識과 實踐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年齡階層別로 보면 20~30代의 젊은 層에서 火葬贊成率이 60.9%로 높은데 반해 高年齡層인 60代 이상에서는 31.7%에 불과해 연령이 많을수록 火葬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火葬을 贊成하는 집단의 贊成理由로는 國土面積이 좁으니 해야한다가 61.4 %로 높아 墓地面積에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火葬해 줄 것을 子孫에게 遺言을 하겠다는 比率은 火葬贊成者中 68.3%로 나타나 앞으로 火葬率은 增加할 것으로 기대된다. 火葬後의 遺骨處理에 있어서는 納骨堂(墓)이용보다는 山이나 江에 뿌린다는 意見이 過半數인 50.7%로 나타나 납골묘(당)에 대한 홍보·계몽이 미흡한 결과로도 해석이 된다.

- 나. 天主教를 포함한 基督教 信者에서의 火葬贊成率이 54.9%로 他宗教에 비하여 높았고 火葬을 권장하는 佛敎에서는 贊成率이 47.2%로 오히려 낮은 水準이었다. 學歷이 높을수록 火葬贊成率은 높아 大卒이상에서 61.7%를 보였다.
- 다. 火葬을 반대하는 者들의 反對理由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가 30.0%로 가장 많았고 傳統的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에가 20.6%, 두번 죽는 것 같아서 19.5%의 順으로 나타나 儒敎的인 葬禮文化에 젖어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제특성을 볼때 向後 環境與件의 變化가 오면 一部는 찬성하는 쪽으로 意思轉向이 豫想된다.
- 라. 納骨墓와 納骨堂에 대한 認知率은 23.6%에 불과했고 市部에서 다소 높아 24.5%였다. 또한 家族納骨墓, 納骨堂을 보급할 경우 사용 하겠다는가 53.9%로 過半數 이상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고, 納骨墓, 納骨堂 사용을 위해서는 火葬이 전제가 되는데 火葬을 하겠다는 應答率은 56.7%로 시설의 現代化와 擴充이 要求된다.
- 마. 時限附 墓地制度 導入에 대하여 62.9%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基本 埋葬期間은 10~20년 미

만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平均埋葬期間은 17.3년으로 政府에서 제시한 15년보다 약간 길었고, 平均 延長回數는 2.3회로 나타났다.

- 바. 無緣故墳墓를 整備하기 위해서는 墓地申告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墓地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法律로 정한다면 기일 내에申告를 하겠다고 肯定的으로 應答한 比率은 62.3%로 나타났고, 하지 않겠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比率은 5.3%에 불과해 本 制度의 施行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無緣故墓 措置에 대해서는 85.3%의 절대다수가 整備를 해야한다고 肯定的으로 意見을 제시하였고, 整備時期는 빠를수록 좋다는 意見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整備方法은 集團納骨堂으로 移葬하는 것이 좋다고 應答한 率이 29.4%로 제일 높았다.
- 사. 墓地再使用에 대해 4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새로운 墓地制度(시한부 묘지제, 아파트식, 계단식 묘지조성 등)의 導入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 아. 個人墓 造成에 대하여 22.5%가 찬성하고, 反對할 필요가 없다고 贊成쪽에 가까운 應答이 50.7%로 個人墓 造成을 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個人墓가 안고 있는 問題가 墓地問題를 解決하는데 基本事實임을 勘案할 때보다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法律案의 마련이 要求된다.
- 자. 風水地理에 대한 信賴程度에 있어서 많이 믿는 편이다가 41.1%, 보통으로 믿는 편이다가 37.9%로 나타나 墓地制度 改善을 위해 國民의 意識을 變化시키는데는 상당한 期間과 노력이 所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 墓地造成地域을 외국과 같이 住居地 인근에 造成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응답률이 30.6%로 이에 대한 弘報·啓蒙이 뒷받침된다면 意識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墓地制度의 導入을 가능케 할 것이다.
- 카. 他人所有의 토지에 主人의 許可 없이 묘를 썼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법으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묘지 基地權이 있다. 이는 본래의 目的과는 달리 사용되어 個人墓의 增加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閉止하고자 하는데 대해 56.9%가 찬성한다고 답하여 法的인 檢證을 거친 후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祖上墓 管理를 子孫들이 어느 정도 하여줄 것인가?에 대한 期待程度를 보면 잘 管理할 것이다 19.4%, 다소 변할지라도 관리는 해줄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比率이 37.9%로 나타나 半數 정도는 子孫들에게 管理를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豪華墓 設置에 관해서 子孫으로서 當然하다고한 應答율은 5.5%에 불과했고, 본인의 자유지만 豪華墓 設置에 反對하는 意見이 59.7%, 法으로 制裁해야 한다가 34.7%로 豪華墓 設置에 대하여 應答者の 절대 다수가 否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었다.

하. 共同墓地에 대한 措置意見을 보면 緣故者가 없는 無緣故墓만 移葬을 하고 緣故가 있는 墓는 緣故者로 하여금 옮기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場所로 모두 集團移葬토록 해야 한다가 26.6%로 나타났다.

거. 傳統的인 葬墓慣行을 개선하기에 앞서 국민의 意識變化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方法으로 放送媒體(라디오, T.V)를 통한 方法이 55.8%로 가장 많았고, 學校敎育을 통해서는 26.2%였다.

6. 葬墓 行態

가. 應答者の 19.4%가 本人 또는 配偶者の 墓地를 확보해 놓았다고 했고 墓地類型은 個人墓地가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子孫들에게 바라는 墓地類型은 역시 個人墓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郡部에서 더 높아 67.1%였다. 本人의 葬禮方法에 대해 遺言을 하겠다는 比率은 38.3%이었고, 그 중 遺言內容은 葬禮方法이 57.9%, 묘자리에 대한 遺言이 30.3%였다.

나. 父母의 墓를 현재의 위치에 쓰게 된 理由를 보면 先山이기 때문에 모셨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남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가 10.7%로 個人墓가 70% 이상이었고 集團墓地에 모신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자리 選定에 있어 明堂與否를 가려 選擇했다는 比率이 80.6%로 風水地理 신뢰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믿고있다고 답한 율(79.0%)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墓자리 選擇은 가족이 議論해서 정하였다가 37.5%로 제일 많았고,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地官)이 37.0%로 나타났다. 또한 宗教有無別로 明堂 選擇與否를 보면 儒敎가 91.5%로 가장 높고 佛敎가 87.7%, 基督教 74.0%였고,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는 77.5%로 나타났다. 集團墓地를 제외한 대부분의 個人墓地는 不法墓地라고 볼 수 있다. 父母님의 墓地가 許可난 墓라고 응답한 比率은 市部에서 55.2%인데 비해 郡部에서는 25.6%로 지역 여건상 개인묘를 많이 쓴 결과로 해석된다. 부모님의 묘자리에 대하여 滿足하다가 52.7%, 不滿足하다는 9.1%였으며 不滿足 理由로는 거리가 멀어서 31.7%, 타인의 산이라서 25.5%, 明堂이 아니기 때문인가 16.1%로 나타났고 移葬을 원하는 場所로는 個人墓가 35.6%로 제일 많았다.

다. 祖上의 墓를 移葬한 經驗이 있는 사람은 26.3%였고, 移墓理由는 家族(先山)墓地로 옮기기 위해서가 28.2%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때문인가 20.2%, 合葬하기 위해서 16.9%, 明堂이 아니라서 12.9%順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論 議

研究結果에 意味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 장의 政策代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分析된 結果를 意識과 行態로 區分하여 論議를 展開하고자 한다.

1. 墓地制度에 대한 意識

가. 墓地에 대한 問題意識

우리의 地理的 與件에 비해 묘지면적이 계속 增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墓地問題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70.7%가 意識하고 있고, 1987년에 조사한 자료(윤양수, 1987)에도 묘지의 擴散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에 대하여 70% 이상이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2, '87, '89년도에 조사한 자료(김태복, 1992)에도 각각 39%, 50%, 78.3%로 年次的으로 墓地問題에 대한 意識程度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本 結果와 附合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墓地難에 直面하기 前에 現행 묘지제도 改善의 必要性을 뒷받침하는 結果로 해석할 수 있고, 국토의 경제적 이용가치면에서도 改善되어야 함을 示唆하고 있다.

나. 墓地 法律에 대한 認知度

墓地制度和 관련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9호)이 있다. 이 法律의 有無 認知度는 37.9%에 불과하여 우리의 葬墓文化는 전통적인 慣行에 따라 이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現행 묘지제도가 그 效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埋葬을 하는데 있어 관할 官청에 申告 해야한다는 사실도 43.4%만이 알고 있어 弘報·啓蒙의 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또한 묘지문제를 改善하기 위해 規制를 違法한 경우에 따른 罰則을 強化할 경우 이에 대한 意見中 25.8%는 지킬 수 없는 것은 絶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答하여 墓地法律이 지금까지 有名無實하게 그 效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墓地面積에 대한 意識

墳墓 1기당 法的 基準 면적이 個人墓는 80㎡(24평), 集團墓는 30㎡(9평)

이고, 실제의 占有面積은 평균 50㎡(15평)로 이는 외국(3~4㎡)에 비해 월등히 넓다. 이같은 面積 크기와 埋葬을 위주로 한 慣行이 합하여 묘지의 占有率 增加를 가져왔고, 縮小의 必要性이 대두된 것이다. 本 調査結果 46.1%가 縮小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나 52.4%는 현행 그대로를 원하고 있어 問題意識과 서로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어 基準面積을 縮小할 경우 어느 정도 遵守할 지가 의문시된다. 기준면적으로 제시된 면적은 평균 2.9평으로 3평이내가 제일 많았다. 面積基準을 정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 우리의 실정,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겠지만 개인묘, 집단묘의 차이를 最小化하고 國家의 施策(국군묘지의 경우 사병과 장성간에 차이)도 改善하는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火葬에 대한 意識 및 態度

현재 火葬率은 19.1%(보건사회부, 1994)로 매년 0.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趨勢이지만 外國에 비하면(제2장 참조) 월등히 낮은 實情이다. 따라서 墳墓 1기당 점유면적은 넓고 火葬率은 낮은 것이 우리 墓地制度의 實像이며 問題이다. 그러나 本 調査結果 火葬 찬성률이 50.1%이고, 화장을 反對하는 집단 중 반대의사를 고집하는 40%를 除外한 나머지는 與件變化에 따라 贊成하는 쪽으로 意識轉換이 豫想되므로 앞으로 화장율의 증가를 示唆하는 것으로 解析된다. 화장률의 증가 폭을 높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弘報·啓蒙의 強化와 사회지도층의 率先垂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納骨墓(堂)에 대한 意識

墓地面積을 縮小하고 화장에 대한 否定的인 意識(태워 없어진다)을 減少시킬 수 있는 葬墓 施設이다. 이는 時限附 墓地制度和 유관하여 時限이 지난 遺骸는 화장을 하지 않고도 地下에 安置할 수 있는 長點이 있어 火葬을 반대하는 儒敎界에서도 納骨墓 安置를 전제로 한 火葬에 대해서는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어 納骨墓의 現代化和 擴充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23.6%만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알고 있어 弘報의 필요성이 切實하며, 家族納骨墓를 보급할 경우 53.9%가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바. 時限附 墓地制度에 대한 意識

緣故者의 要求에 따라 매장기간을 限時的으로 定하여 期間이 지나면 집단묘, 집단납골묘(당) 등으로 移葬하여 묘지를 再整備 할 수 있고, 再使用 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아직 우리의 文化 情緒上으로 볼 때 時期的으로 이른감이 있으나 墓地難을 눈앞에 둔 우리는 이의 導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결과도 62.9%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큰 障礙가 없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門中(宗中), 家族墓地 等에는 例外規程을 두어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사. 墓地 申告制에 대한 態度

墓地 法律의 有名無實은 不法墓, 無緣墳墓, 호화묘의 발생을 招來하였다. 이러한 묘를 整備하고 제도 改善에 필요한 資料를 얻기 위해서는 묘지실태의 把握이 필요하다. 이의 方法으로 墓地一齊申告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하도록 할 경우 5.3%만이 하지않겠다고 하여 施行上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法律 改正에 앞서 施行함이 效果가 클 것이다.

아. 墓地 再使用에 대한 意識

風水地理의 영향으로 터에 대한 關心이 높다. 따라서 他人이 사용한 墓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부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墓地難을 解決하고 時限附 墓地制 導入의 效果를 提高하기 위해서는 墓地의 再使用이 慣行的으로 定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44.6%가 再使用을 찬성하고 있어 肯定的인 評價를 할 수 있다.

자. 個人墓에 대한 意識

集團으로 구성되어 있는 墓를 제외한 것을 個人墓라고 한다. 이는 面積, 設置地域, 許可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制度改善에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墓 구성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다(50.7%)를 포함하여 찬성한다가 22.5%로 대부분이 肯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規制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 風水地理와 宗教의 影響

전통적으로 埋葬과 明堂을 選好토록 意識을 지배해 온 風水地理에 대해 20.9%만이 안민한다고 답하여 信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火葬率이 높고, 이를 믿지 않는 先進國을 볼 때 터에 따라 吉凶禍福이 있다고 믿는 우리의 意識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믿고 있는 宗教가 장례방법, 묘지선택 등에 影響을 미친다고 31.2%가 의식하고 있어 墓制改善에 宗教는 障礙要因이 안될 것으로 思料된다.

카. 墓地造成地域에 대한 意識

外國과 같이 면적을 縮小한 墓地, 納骨墓(堂)를 주거 空間內에 造成(設置)하는 것에 대해 30.6%가 찬성하여 施行에 앞서 示範的으로 運營하면서 묘지에 대한 嫌惡意識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 墓地 基地權에 대한 態度

肯定的인 면보다는 否定的인 목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墓地基地權에 대해 56.9%가 閉止를 찬성하고 있어 關係部處와의 협의 및 法的 檢證을 거쳐 폐지 또는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 子孫에 대한 墓地管理 期待意識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가정의 증가, 墓地에 대한 意識의 變化는 자손에게 祖上의 묘지관리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는 假定은 本 調査結果 42.7%가 否定的으로 意識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손에 대한 否定的인 의식이 점차 높아진다면 새로운 墓地制度의 要求率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墓制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 墓地制度 改善을 위한 弘報·啓蒙 方法

傳統的인 의식의 變化와 새로운 墓地制度를 弘報·啓蒙하는 方法으로 放送媒體(라디오, T.V)가 55.8%로 가장 많고, 學校敎育이 26.2%로 나타났다. 현재의 敎科內容이나 放送媒體에서 다루는 墓地에 대한 內容(성묘, 제례 등)이 傳統的인 儒敎思想에 치우쳐 있어 社會的인 여건의 變化가 優先되어야 할 것이다.

2. 葬墓 行態

가. 本人의 墓地準備

調査對象者의 19.4%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墓地를 確保하고 있고, 자손들에게 바라는 墓地는 個人墓를 가장 많이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祖上墓 造成 行態

作故하신 부모님의 묘를 현재의 位置에 쓴 理由는 先山이라서가 63.1%로 가장 많고, 묘자리 선택에 있어 80.6%가 明堂자리를 선택하였고, 묘지 許可與否에 있어 46.9%만이 허가난 묘로 알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앞서 意識 부분에서 言及한 內容을 뒷받침하고, 埋葬, 個人墓, 明堂, 넓은면적 등을 選好하는 意識行態로 集約된다.

다. 移葬(개장) 實態

26.3%가 移葬을 경험하였고, 移葬理由로는 家族墓地로 옮기고 싶어서가 제일 많아 個人墓 選好를 뒷받침하고 있다.

第 3 節 政策 建議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家族의 墓地를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며, 원하는 類型대로 墓地造成을 할 권리가 있다. 단지 땅이 부족하다는 식의 理由는 이러한 權利를 제한할 수 없으며, 問題解決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墓制가 현행대로 持續된다면 不遠間에 墓地難을 겪어야 할 時點에 와 있음을 勘案하여 非生産적이고 非合理的인 國民의 意識變化를 主導하고, 묘지관리의 效率性を 높이며,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에서 개선하고자 提示한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改正案에 대한 國民의 意識과 行態를 重點의으로 分析한 本 연구 結果를 토대로 墓地制度改善의 政策 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한다.

1. 葬墓文化에 대한 國民 意識變化

國民의 意識속에 뿌리깊게 潛在하고 있는 意識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漸進的인 意識變化를 위한 구체적인 弘報·啓蒙 戰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具體的인 戰略 方案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大衆 電波媒體를 통한 弘報·啓蒙 敎育

本 調査結果 가장 많은 사람이 提示한 方法으로 意識變化에 中樞的이고, 效果的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달해 온 墓地

內容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묘지제도상의 問題點과 外國의 墓地制度를 소개하며, 국민들 스스로 不合理한 傳統的인 意識에서 벗어나 새로운 墓制를 수용할 수 있도록 先導해야 할 것이다.

나. 定規教育을 통한 教育

次善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學校 定規敎科 과정을 통해 教育을 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대부분 祖上의 묘에 대해 孝의 산물로 認識 하도록 傳統的인 意識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나라의 墓地制度和 문제점, 묘에 대한 概念, 葬禮方法을 소개하여 점진적인 意識의 變化를 誘導한다.

다. 集團教育

國民과의 接近度を 높여 弘報·啓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方法으로 班常會, 각종 지역 自生團體의 모임, 職務教育, 職場, 軍 등에 자료를 製作하여 배부하거나, 各 團體의 소속원 중 講師 적임자를 選定하여 교육을 履修케 하고 傳達教育을 하도록 한다.

라. 社會指導層의 率先垂範

外國의 경우 指導層의 率先垂範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음을 勘案, 우리나라 지도층의 勸諭수범은 더욱 效果가 클 것이 기대된다. 그 理由는 本 調査結果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묘제에 대한 問題意識과, 새로운 묘제에 대한 受容 意志가 높기 때문이다.

2. 制度 改善

傳統的인 의식의 變化와 함께 實踐할 수 있는 제도의 改善이 並行되어야 한다.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庭의 增加, 祖上墓에 대한 意識

의 변화 등은 새로운 墓制를 要求하게 될 것이다. 또한 墓地問題는 長期的으로 그 深度가 나타나는 것으로 一定期間이 지나면 墓地難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局面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를 勘案하여 長·短期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墓地面積 縮小

조사 결과 面積縮小에 대해 大多數의 呼應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墓地 法律規程上的 基準부터 우리실정으로는 外國에 비해 越等히 넓다. 이의 縮小를 어느 정도 水準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단계의 審議 과정을 통해 定하겠지만 縮小는 반드시 해야 하며, 縮小의 폭은 클수록 바람직하고, 集團墓와 個人墓間에도 차이는 最小化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火葬率 提高

우리와 文化圈이 비슷한 나라의 火葬率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現在의 火葬率에 비해 화장을 찬성하는 율이 높게 나타나 向後 火葬率의 증가를 肯定的으로 解析할 수 있다. 또한 火葬을 반대하고 있는 儒敎의 경우도 納骨墓를 전제로한 火葬은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고, 基督教界에서도 이를 勸獎하는 立場에 있어 火葬에 대한 弘報, 火葬場 시설의 現代化와 擴充이 뒷받침된다면 그 效果는 더욱 클것으로 樂觀된다. 이와 함께 一定期間 화장을 하는 대상에게 報償制(화장장, 납골묘, 당 이용료 무료 및 할인 혜택)를 도입하는 방안도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集團墓 利用率 提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個人墓에 대한 選好率뿐만 아니라 利用率이 높다. 相對的으로 集團墓의 利用率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既存 및

新設 集團墓의 施設을 公園化하고, 事後管理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利用 慾求를 極大化하며, 相對的으로 個人墓 設置基準을 強化한다.

라. 時限附 埋葬制 導入

앞으로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庭의 增加, 墓에 대한 意識變化 등은 祖上墓 관리를 자손들에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는 假定에 대해 반수정도가 同意하고 있으며, 本 制度의 導入을 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施行할 경우 일부 계층에서의 反對 또한 클 것이다. 이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例外規程을 두어 문제의 발생 소지를 막고, 本 制度의 目的이 無緣故墓의 발생을 막고 墓地의 再使用에 있으므로 目的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時限이 지나면 遺骨을 정리하여 納骨墓(堂)에 安置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施設의 擴充이 要求된다.

마. 無緣墳墓의 整備

全國 墳墓의 약 40%에 해당하는 750萬基의 無緣墳墓를 整備하기 위해서는 墳墓一齊 申告를 실시해야 한다. 公·私設 公園墓地의 경우 묘적부가 비치되어 無緣墳墓의 파악은 어렵지 않으나, 全國에 散在해 있는 個人墓地에 대하여 申告를 실시토록 하고 그 結果에 따라 신고된 既存의 無許可 墓地는 既得權을 인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陽性化하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墳墓는 無緣墳墓로 간주하여 納골묘(당)로 이장토록 제도를 보완한다.

바. 墳墓 一齊申告 實施

無緣墳墓, 不法墓, 豪華墓 등을 索出하고 새로운 墓地制度를 樹立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墳墓에 대한 實態把握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의 방법으로 墳墓 一齊申告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반수 이상이 기일내에 하겠다고 한 결과는 施行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으며, 이를 定期的으로 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 火葬場, 納骨墓(堂) 施設의 擴充과 現代化

새로운 墓制의 導入과 수요증가에 원활히 供給하기 위해서는 墓地代替 施設의 擴充이 必要하다.

火葬 및 納骨制의 擴大 普及을 위해서는 이들 施設의 擴充과 裝備의 現代化가 優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火葬場 시설은 老朽 또는 落後되어 있어 施設改善을 위한 投資가 果敢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 罰則強化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위해 法이 있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墓地에 관한 법은 傳統的인 慣習과 慣行이 우선적이라는 固定觀念에 따라 有名無實한 實情이며, 이를 本 調査結果는 뒷받침하고 있다. 罰則強化만이 문제해결의 最善策은 아니지만 豫防的 차원에서의 效果를 얻기 위함은 물론, “아무리 벌칙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否定的인 意識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 墳墓 基地權의 修正 또는 閉止

본래의 目的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어 副作用을 유발하고 있는 基地權에 대해 반수 이상이 閉止를 찬성하고 있어 충분한 法的 檢證을 거쳐 修整 또는 閉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豪華墓 設置 抑制

일부 階層에서 쓰고 있는 豪華墓의 波及되는 問題는 크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反對를 하고 있고, 墓地難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強力한 規制를 통해 이를 抑制하여야 할 것이다.

카. 墓地 造成地域 調整

墓地에 대한 傳統的인 嫌惡感を 拂拭하고 새로운 墓制의 도입을 위해 外國과 같이 住居 空間 또는 隣近에 축소한 묘지, 납골묘(당)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수는(30.6%) 아니지만 이를 示範的으로 運營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管理體系 改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地域의 實務 擔當者들로부터 收斂한 意見으로 “현재 묘지관리를 위한 하부조직이 미흡하고, 담당인력이 부족한 실정하에서의 효율적인 묘지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責任行政을 할 수 있는 組織과 人力의 充員은 물론 管理體系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강원도, 『묘지관련 유립연수 보고서』, 1993.

金得中, 『儒林의 入場에서 墓地制度 改善方案』, 墓地制度 改善方案 公聽會, 한국장묘연구회, 1993, 6.

김성호·이두순·박석두·박찬남, 『산지 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0.

金泰福 編著, 『都市와 墓地』, 槿花出版社, 1992, p.118.

다산연구회, 『역주목민심서IV』, 창작과 비평사, 1984. pp.278~292.

藤井正雄(Fujii Masao), 「일본에 있어서의 火葬의 전개와 법규제」, 『土地行政』, 1994, 5, pp.76~78.

보건사회부, 『墓地制度 檢計報告書』, 1991.

보건사회부, 『美洲地域 葬墓文化 研修報告書』, 1994.

愼鏞廈, 『독립협회의 사회사상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3, pp.169~171.

오홍석, 「법률개정안의 통과와 향후 확산방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불교방송, 1994, p.23.

Wu Chuan-jun, 「중국의 토지이용과 묘지문제」, 『都市와 墓地』, 槿花出版社, 1992.

尹陽洙·崔榮國, 「墓地制度의 問題와 改善方案」, 『국토연구 제8권』, 國土開發研究院, 1987,12, pp.1~21.

尹陽洙·崔榮國·徐泰晟·崔侖植, 『墓地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國土開發研究院, 1987,12.

이성한, 「법률개정안의 통과 당위성 및 보류된 연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불교방송, 1994.

鄭奎南, 葬墓文化發展方案公聽會, 韓國葬墓研究會, 1992..

鄭吉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연구」, 『釜山史學』, 第7輯, 1983, p.22.

鄭吉子, 「신라 葬骨器 연구」, 『한국고고학보』, 第8輯, 1980, p.40.

조남훈 외, 『家庭儀禮에 관한 意識行態調查結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趙宗植, 『地籍』, 大韓地籍公社, 1992. p.71.

崔昌祖,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308.

崔虎林, 『조선시대 묘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韓國葬墓研究會, 葬墓文化發展方案 公聽會, 1992.

홍석기, 「프랑스의 화장」, 『토지 행정』, 1994, 7, pp.65~66.

附 錄

調 查 票

표지제도개선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994년

<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표지제도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우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귀하의 의견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을 감안하시어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조사표 번호	
주 소	시 구 동 아파트 _____동 _____호 _____도 _____시 _____읍 _____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통 _____반 _____군 _____면							
가구주성명			응답자구분	☐ 가구주 본인 ☐ 가구주의 배우자 ☐ 기타				
조사자성명	(인)		조사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_____시 _____분				
조 사 결 과	☐ 완료 ☐ 장기출타 ☐ 응답거절 ☐ 기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사 회 부

작성요령: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앞의 ☐에
V표를 하시거나 적합한 숫자 또는 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로 연결된 문항에 답하신 경우는
그 문항도 반드시 답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묘지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가구주(세대주) 입니까 ?

- ☐ 1. 가구주 이다 ☐ 2. 가구주의 배우자이다

2. 귀하의 성별은? ☐ 1. 남 ☐ 2. 여

3. 귀하의 현재 연령은? 만 _____ 세

4.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장손 입니까 ?

-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5. 귀하가 현재 믿고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 1. 불교 ☐ 2. 유교 ☐ 3. 천도교 ☐ 4. 기독교(개신교)
☐ 5. 천주교(구교) ☐ 6. 없다 ☐ 7. 기타()

6. 귀하의 학력은?

- ☐ 1. 무학 ☐ 2. 국졸 ☐ 3. 중졸 ☐ 4. 고졸 ☐ 5. 대졸이상

7. 귀택 가구주(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시는 일을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하시는일: _____

8. 묘지관리를 위한 법률이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 ☐ 1. 알고있다. ☐ 2. 모른다

9. 현재 귀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식구)은 모두 몇분 이십니까? _____명

10.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분의 경우) 현재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계십니까?

- ☐ 1. 우리가 모시고 있다 ☐ 2. 장손(큰아들)이 모시고 있다
☐ 3. 독립해서 계신다 ☐ 4. 기타(어디에 계신지요?:)

11.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작고하신 경우) 작고하신 분은 누가 모셨습니까?

- ☐ 1. 우리가 모셨다 ☐ 2. 장손이 모셨다
☐ 3. 독립해서 사셨다 ☐ 4. 기타(누가모셨습니까?:)

12. 우리나라의 국토는 좁은데 비해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 2. 문제가 되지만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 ☐ 3. 아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 4.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13.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작고하신 분만 답하십시오. (생존해 계신분은 제외)

(1) 묘소를 현재의 위치에 쓰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1. 선산(가족, 문중묘지) 이라서
- ☐ 2. 공설 공원묘지에 미리 준비해 두어서
- ☐ 3. 사설 공원묘지에 미리 준비해 두어서
- ☐ 4. 종교단체묘지에 미리 준비해 두어서
- ☐ 5. 공설(시립) 공원묘지인데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 ☐ 6. 사설 공원묘지인데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 ☐ 7. 종교단체 묘지인데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 ☐ 8. 남의 산이지만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 ☐ 9. 기타(이유: _____)
- ☐ 10. 생존해 계신다

(2) 묘자리를 정할때 좋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골라서 하셨습니다 ?

- | | |
|--|---|
| ☐ 1. 그렇다 -----> | 누가 정하셨습니다 ?
☐ 1. 집안 식구들이 의논해서
☐ 2. 집안 친척이
☐ 3. 묘자리를 볼줄아는 사람이
☐ 4.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 5. 기타(누가?: _____) |
| ☐ 2. 그렇지 않다 | |

(3) 현재 부모님을 모신곳은 허가가 난 묘지입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 3. 모르겠다

(4) 부모님의 묘소에 다녀 오시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승용차 편으로는 왕복 : 약 _____ 시간. 도보로는 왕복: 약 _____ 시간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약 _____ 시간

(5) 현재 부모님의 묘자리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 하십니까?

- ☐ 1. 매우만족 ☐ 2. 만족 ☐ 3. 보통

☐ 4. 불만족

☐ 5. 매우불만족

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남의 산이라서 ☐ 2. 거리가 멀어서
☐ 3. 명당이 아니라서 ☐ 4. 묘자리에 물이나서
☐ 5.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 6. 기타(이유:)

2.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면 어느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 ☐ 1. 공동묘지 ☐ 2. 공설 공원묘지
☐ 3. 사설공원묘지 ☐ 4. 종교단체 묘지
☐ 5. 개인(선산, 문중)묘지 ☐ 6. 남골묘(당)
☐ 7. 기타(어느곳:) ☐ 8. 옮기고 싶지 않다

14. 귀하께서는 집안에서 상(喪)을 당할 경우 묘지를 선정하는데 어느정도 결정권이 있습니까?

- ☐ 1. 매우 많다 ☐ 2. 많다 ☐ 3. 보통이다 ☐ 4. 거의없다 ☐ 5. 전혀없다
☐ 6. 묘가 준비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다

15. 조상(부모를 포함하여 고조부모 까지)의 묘소중 옮기거나(이장), 개장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1. 어느분의 묘를 하셨습니다? 누구: _____

2. 하시기된 가장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1. 지역개발 사업 때문에 ☐ 2. 묘지 사용권 때문에
☐ 3. 관리상의 이유 때문에 ☐ 4. 명당이 아니라서
☐ 5. 합장 하려고 ☐ 6. 선산(가족)묘지로 옮기려고
☐ 7. 거주지 가까운곳에 모시려고
☐ 8. 기타(이유:)

3.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 ☐ 1. 화장을 하였다 ☐ 2. 공동묘지로 ☐ 3. 공설공원묘지로
☐ 4. 사설공원묘지로 ☐ 5. 종교단체묘지로
☐ 6. 선산(가족)묘지로 ☐ 7. 기타(어디로:)

16. 귀하께서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설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 ☐ 1. 전적으로 믿는다 ☐ 2. 대체적으로 믿는다
☐ 3. 반정도는 믿는다 ☐ 4. 조금은 믿는다
☐ 5. 안믿는 편이다 ☐ 6. 전혀 안믿는다

17. 돌아가신 조상의 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생존해 계신분은 제외)

(해당되는 곳에 ○ 표 또는,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질 문 구 분	부	모	조 부	조 모	중조부	중조모	고조부	고조모
묘소의 유형은?(번호기입)								
1. 화장했다 2. 공동묘지 3. 공설공원묘지 4. 사설공원묘지 5. 종교단체묘지 6. 개인, 가족, 중증묘지 7. 모른다								
현 위치에 모신 기간 (번호기입) 1. 3년 이내 이다 2. 5년 이내 3. 10년 이내 4. 15년 이내 5. 20년 이내 6. 21년 이상 되었다 7. 모른다								
합장을 하신 분은? (○ 표)								
묘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의 묘는?(○ 표)								
1년에 최소한 1번은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의 묘는? (○ 표)								

18. 귀하가 믿고 있는 종교가 부모님이나 앞으로 본인의 장례방법 또는 묘자리를 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1. 매우 크게 미친다 ☐ 2. 크게 미친다
☐ 3. 보통이다 ☐ 4. 미치지 않는다
☐ 5. 전혀 미치지 않는다 ☐ 6. 종교가 없다

19. 귀하께서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손에게 장례방법에 대해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 ☐ 1. 하겠다 ☐ 2. 하지 않겠다

→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20. 조상의 묘소 면적(전체)은 약 얼마나 됩니까?(합장이 아닌 경우 합하여 평수를 기록 하십시오)

- 1) 부모의 묘소 약 _____평 2) 조부모의 묘소 약 _____평
3) 증조부모의 묘소 약 _____평 4) 고조부모의 묘소 약 _____평

21. 귀하의 집안에서 돌아가신분을 화장 하신적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1)언제: 19____년____월경 2)누구를: 3)당시 그분의 나이는: 만 _____세 4)화장을한 사유: 5)유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뿌렸다. ☐ 납골묘(당) ☐ 기타
--

22. 전체 국토면적증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하는 것을 적극 권장 할 경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23. 화장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답하십시오. (반대는 다음질문으로)

(1) 앞으로 귀하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손에게 화장해 주기를 유언 하시겠습니까?

- ☐ 1. 하겠다 ☐ 2. 하지않겠다

1. 유언하시면 자손들이 화장해 줄것으로 믿으십니까? ☐ 1. 해 줄것이다 ☐ 2. 안할 것이다 ☐ 3. 모르겠다

(2) 화장을 한후 유골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 ☐ 1. 납골묘에 ☐ 2. 납골당에 ☐ 3. 산, 강에 뿌린다 ☐ 4. 기타()

(3) 화장하는 것을 친척이나, 이웃에게 권하시겠습니까?

- ☐ 1. 권하겠다 ☐ 2. 권하지 않겠다 ☐ 3. 생각해 보겠다

(4)(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분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화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 ☐ 1. 나는 원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 2. 나의 뜻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를 것이다.
☐ 3. 부모님을 설득하여 할 것이다
☐ 4. 기타()

(5) 귀하께서 화장을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24. 화장을 반대하는 분만 답하십시오(찬성하시는 분은 다음질문으로)

(1)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의 지도층이 화장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반대의 생각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 ☐ 1. 바꾸지 않겠다 ☐ 2. 바꾸겠다 ☐ 3. 생각해 보겠다

(2) 화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1.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 2. 풍수지리설을 믿기때문에
☐ 3.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 4.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 5. 자손들로 부터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 6. 두번 죽는것 같아서 싫다.
☐ 7. 이유는 없으나 화장하는 것이 싫다
☐ 8. 기타(이유:)

(3) 화장을 하더라도 유골을 잘 정리하고, 납골묘에 안장하여 전통적인 제례등 조상을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화장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 1. 그래도 절대로 원치 않는다
☐ 2. 자손들이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따르겠다
☐ 3. 생각해 보겠다

(4)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분의 경우) 부모님이 화장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1. 원하시면 그대로 따를것이다
☐ 2. 원하시더라도 하지 않을것이다
☐ 3. 모르겠다

(5)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자손들이 화장하는 것을 찬성하여 부모를 화장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1. 유언을 하여서라도 적극 못하도록 하겠다
☐ 2. 화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은 하겠다
☐ 3. 원치 않지만 자식 하는대로 따를 것이다
☐ 4. 자식 하는대로 따르겠다
☐ 5.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다

(6) 귀하께서 화장을 반대하시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25. 납골당, 납골묘가 어떠한 장묘제도인지 아십니까?

-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 3. 조금은 알고 있다

26. 다음 문항중 화장을 하여 납골묘(당)를 할 경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 표 하십시오

- () 1. 부족한 묘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2. 먼곳까지 성묘를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다
 () 3. 장례에 따른 경비가 저렴하다
 () 4. 자연경관 훼손을 줄인다
 () 5. 국토 이용율을 높인다
 () 6. 호화묘지 등 허례허식을 줄일 수 있다

27. 묘지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때 묘지의 재사용(이장하여 빈자리)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28. 납골당, 납골묘는 적은 면적안에 많은 유골을 모실 수 있는 좋은점이 있습니

다. 가족 납골묘를 만들어 보급 한다면 사용 하시겠습니까?

- ☐ 1. 사용하겠다 ☐ 2. 사용하지 않겠다

납골당, 납골묘에 유골을 모시려면 화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 ☐ 1. 하겠다 ☐ 2. 절대로 하지 않겠다 ☐ 3. 생각해 보겠다

29. 귀덕에서 상(喪)을 당하여 묘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1. 언제 있었습니까? _____ 년도

2. 어떤 어려움 이었습니까?

- | | |
|--|--|
| ☐ 1. 묘지구입이 어려웠다 | ☐ 2. 묘지구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 |
| ☐ 2. 명당 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 ☐ 4. 장례방법에 대해 가족간에 의견 |
| ☐ 5. 기타() | 일치가 안되었다 |

30. 현재 분묘 1기당 개인묘는 6평, 집단묘(공원묘)는 3평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현행 그대로가 좋다 ☐ 3. 더 넓히는 것이 좋다

우리실정에 적합한 묘 1기당의 면적은 얼마가 좋겠습니까 ?

약: _____ 평정도

31. 일부 계층이 호화묘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자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 2.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3.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 4. 법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

32. 호화묘라고 하면 묘 1기당 몇평 이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약 _____ 평이상

33. 종중(문중), 가족묘라고 하여 묘지를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 3. 반대할 필요는 없다

34. 무연고 묘지 등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가 많습니다. 소위 주인없는 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국가에서 정비해야 한다 ☐ 2. 현재 그대로 둔다

1. 언제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 1. 빠를수록 좋다 ☐ 2.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3.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이 좋다 ☐ 4. 일정기간후에 하는 것이 좋다

2.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 1. 집단묘지로 모두 이장한다 ☐ 2. 집단 납골묘로 모두 이장한다
☐ 3. 집단 납골당으로 모두 이장한다 ☐ 4. 기타()

35. 묘를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묘지 신고제도를 강화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해야한다
☐ 2. 강제로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 3. 할 필요가 없다

36. 우리나라는 산에만 묘를 쓰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주거지 인근에 공원화 하여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2. 바람직 하다 ☐ 3. 보통이다
☐ 4. 반대한다 ☐ 5. 적극 반대한다

37. 개인적으로 선산이나 타인 소유의 산에 개인묘를 쓰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묘가 국가적으로 어떠한 해가 있다고 생각 하 시는지 다음 문항중 해가 된다고 생각 되는곳 ()에 ○ 표를 하십시오.

- () 1. 국토개발에 장애가 된다
 () 2. 토지활용에 장애가 된다
 () 3.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 4.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 5. 묘지공급 부족을 초래한다

38. 귀하의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자손들이 어떤곳에 모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 ☐ 1. 공동묘지 ☐ 2. 공설 공원묘지 ☐ 3. 사설 공원묘지 ☐ 4. 종교단체 묘지
☐ 5. 개인(가족, 선산)묘지 ☐ 6. 화장한후 납골묘에 ☐ 7. 화장한후 뿌린다
☐ 8. 기타()

39. 귀하 또는 배우자를 위해 묘지를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 ☐ 1. 확보해 놓았다 ☐ 2. 못하였다

→어디에 마련 하셨습니까?: _____

40. 묘지로 허가가 나지 않은 곳(개인소유 산)에 묘소를 쓰는것은 불법 입니다. 이러한 불법묘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 ☐ 1. 그대로 둔다
☐ 2. 벌금을 물게 하고 양성화 시킨다
☐ 3. 벌금을 물게하고 허가난 묘지로 옮기도록 한다
☐ 4. 벌금은 물지않고 허가난 곳으로 옮기도록 한다
☐ 5. 기타(어떻게: _____)

41. 묘지의 면적, 장소, 신고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42. 법적으로 정한 묘지의 면적, 장소,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또는 징역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43. 매장 또는 개장(이장)을 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44. 각 지방에는 작고 오래된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어서 경관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 1. 일정한 장소로 모두 이장을 한다
☐ 2. 모두 유골을 정리하여 납골묘(당)에 옮긴다
☐ 3.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당)로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 4.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당)로 옮기고 나머지는 연고자로 하여금 옮기도록 한다
☐ 5. 현행 그대로 둔다

- ☐ 6. 기타(어떻게: _____)

45. 귀하의 다음세대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조상의 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1. 잘 할것으로 생각한다.
☐ 2. 다소 변할지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 3.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전통적인 관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 5. 기타()

46. 일정기간이 지난 묘는 대부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이 오래 되어 연고자가 없거나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장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1. 기본적으로 매장기간을 정하고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 회수를 정한다면 몇년에 몇회 연장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1)기본 매장기간 : 년
 2)연장회수: 회

47. 묘지로 허가가 나지않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사용권을 주장하거나, 보호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48. 공설 공원묘지, 법인묘지에 대하여 생존해 있는분이 묘지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예약할 수 있는 나이는 몇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____세

49. 묘지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관행)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1.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 2. 신문을 통한 홍보 ☐ 3. 관련법의 벌칙 강화
☐ 4. 학교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 ☐ 5. 기타(어떤방법:)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調査 研究

1994年 12月 日 印刷 값 3,000원
1994年 12月 日 發行

著 者 林 鐘 權 外
發行人 延 河 清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355-8003~7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著者 略歷〉

林 鐘 權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獸醫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保健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員 研究委員

趙 洪 湜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農學科 卒業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學科 修了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首席管理員

張 東 鉉

Calvin 神學大學 神學科 卒業
總會神學大學 神學科 神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員 主任研究員
